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12/ 31 통권 1760호



2026년 稅計財經 Diary

세무·회계·재무·경영수첩

I. 세금신고납부 핵심사항

- 2026년 세무·회계달력 / 1
- 2026년 세무일지(12개월의 신고납부일) / 13
- 법정 4대보험의 개요 및 보험료 부담 계산·납부 방법 / 17

III. 세무환율정보

-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 48

II. 2026년 시행 중요세법 핵심사항 요약

- 법인세법 개요 / 18
- 부가가치세법 개요 / 22
- 소득세법 개요 / 27
- 조세특례제한법 개요 / 3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요 / 40
- 지방세법 개요 / 43

서울본사(영등포) 829-7557

서초본실 02-829-7535, 7560 (서초구 양재동)

강남금융본부 070-5101-1651 (서초구 서초동)

가산디지털본실	02-6011-5514	강남지점	516-4199
부산경남본부	051-322-8321	서초지점	6245-7502
대전충청본부	042-525-5558	삼성동지점	571-3700
부산지점	051-819-3308	여의도지점	6959-2378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센트럴지점	2209-0710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영등포지점	2633-9243
경인지점	032-815-2641	가산지점	2026-8838
일산지점	031-817-4189	중소기업지원센터	312-2255
송도지점	032-715-5376	울산지점	052-263-7006

즉시제안과 업무 가능성 답변 010-2672-2250

안세회계법인 Private accounting 829-7575

- 경리·세무·회계·재무·경영·재경 outsourcing
- 상장기업·대기업의 PA와 K-IFRS 재무제표 작성 XBRL
- 회계감사·세무조정·IFRS, 기업가치향상자문, ESG
- 경영자문·장부기장·4대보험자문, 경리총무외주화
- 주식평가·납세신고·정밀실사감사, 기업가치평가
- 인수합병Deal·조세불복·기업구조조정, 청산중자
- 세무예비실사 등 조세자문·전략수립, 세무진단
- 중견기업경영권 상속승계와 증여, 창업오너자문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아웃소싱, 기업기차항상, 경영권승계자문 829-7575
 절세전략건의와 경영자문 稅利處理는 세무박사

2026
 1 JAN

안세회계법인의 전국지점망 서울 829-7557, 7575(치리치리) 강남 516-4199, 서초 6245-7502 삼성 571-3700, 여의도 6859-2378 센트럴 2209-0710, 영등포 2633-9243 가산 2026-8838, 가산디지털 6011-5514 부산점 051-322-8321 대전충청 042-525-5558 부산 051-819-3308 부산중앙 051-714-7227 부산세탁 051-938-9677 경인 032-815-2641 일산 031-817-4189 송도 032-715-5376 울산 052-263-7006	Accounting outsourcing ◆ 회계 세무·재무·경리 포괄외주화 ◆ 회계감사 · 세무조정 · 재무경영자문 ◆ 재정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장기간행물 회원 사업(829-7575) ◆ 개별 기업방문교육훈련 및 관리 분야 전문강사 파견사업(재경고문)	www.eAnSe.com 세무·회계 30분내 Q & A 코너 ◦ 세무·회계·재경동영상강의	안전조세정보 상품안내
--	---	--	------------------------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12 DEC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FEB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안세 회계법인	7	1 신정	2	3 음 1.15
4	5 소한	6		8	9	10
11	12 변안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부 주민세(종합원천) 자진신고납부 권리세(지방교육세·동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자진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동특세 포함) 자진신고납부	13	14	15	16	17
18	19 음12.1	20 대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1	22	23	24
25	26 부가가치세 제2기분 확정신고납부 개별소비세 4분기 신고납부	27	28	29	30	31

2 FEB 2026

[illegible]

1 JAN							2026							3 MAR							2026						
S	M	T	W	T	F	S	S	M	T	W	T	F	S	S	M	T	W	T	F	S							
				1	2	3									1	2	3	4	5	6							
4	5	6	7	8	9	10	8	9	10	11	12	13	14														
11	12	13	14	15	16	17	15	16	17	18	19	20	21														
18	19	20	21	22	23	24	22	23	24	25	26	27	28														
25	26	27	28	29	30	31	29	30	31																		

이웃소싱, 기업가치향상, 경영권승계자문 829-7575
 절세전략건의와 경영자문 税利處理는 세무박사

2026
3 MAR

안세회계법인의 전국지점망 서울 829-7557, 7575(치리치리) 강남 516-4199, 서초 6245-7502 삼성 571-3700, 영등포 6859-2378 세운 2209-0710, 영등포 2633-9243 가산 2026-8838, 가산디지털 6011-5514 부산점 051-322-8321 대전충청 042-525-5558 부산 051-819-3308 부산중앙 051-714-7227 부산서점 051-938-9677 경인 032-815-2641 일산 031-917-4189 송도 032-715-5376 울산 052-263-7006	Accounting outsourcing ◆ 회계 세무·재무·경리 포괄외주화 ◆ 회계감사 · 세무조정 · 재무경영자문 ◆ 재정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장기간행물 회원 사업(829-7575) ◆ 개별 기업방문교육훈련 및 관리 분야 전문강사 파견사업(재경고문)	www.eAnSe.com 세무·회계 30분내 Q & A 코너 ◦ 세무·회계·재경동영상강의	안전조세정보 상품안내 
---	---	---	---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1 삼일절	2 대체 휴일	3 음1.15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개발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별소비세(중간예납) 신고납부 교육세(금융공회합안) 재가분 신고납부 교육세(교육세조항제 포함) 자전신고납부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임용고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과금명세서 제출	4	5 경칩	6	7
8	9	10 반야소득세(노동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미세(중간예납) 신고납부 과세(지방공회합안)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개발소비세 납부 중간예납(과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근로소득금) 제출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음2.1	20 춘분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등 (해당법인의 법인세 포함) 개발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별소비세(중간예납) 신고납부 교육세(금융공회합안) 포함 신고납부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임용고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과금명세서 제출				2 FEB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4 APR S M T W T F S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26

아웃소싱, 기업가치향상, 경영권승계자문 829-7575
 절세전략건의와 경영자문 税利處理는 세무박사

2026
 4 APR

안세회계법인 의 전국지점망 서울 829-7557, 7575(치리치리) 강남 516-4199, 서초 6245-7502 삼성 571-3700, 영등포 6859-2378 세트렐 2209-0710, 영등포 2633-9243 가산 2026-8838, 가산디지털 6011-5514 부산경남 051-322-8321 대전충청 042-525-5558 부산 051-819-3308 부산중앙 051-714-7227 부산세무 051-938-9677 경인 032-815-2641 일산 031-817-4189 송도 032-715-5376 울산 052-263-7006	Accounting outsourcing ◆ 회계 세무·재무·경리 포괄외주화 ◆ 회계감사 · 세무조정 · 재무경영자문 ◆ 재정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장기긴행물 화원 사업(829-7575) ◆ 개별 기업방문교육훈련 및 관리 분야 전문강사 파견사업(재경고문)	www.eAnSe.com 세무·회계 30분내 Q & A 코너 ◦ 세무·회계·재경동영상강의	안건조세정보 상품안내
--	---	--	------------------------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3 MAR 2026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 MAY S M T W T F 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31 25 26 27 28 29 30	7 	1 2 음2.15	2 3	3 4	4
5 식목일, 청명	6 한식	8	9	10 법안·소득세(노동세 포함) 원전주소분 납부 조세(세종안양분) 신고납부 관세(세종안양분) 소득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가담세 신고납부	11	11
12	13	14	15	16	17 음3.1	18
19 4.19혁명	20 곡우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1	22	23	24	25 부가직세 제기본 애장신고납부 개별소비세 1분기 신고납부
26	27	28	29	30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부가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별소비세(주행차 포함) 신고납부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영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아웃소싱, 기업기차항상, 경영권승계자문 829-7575
 절세전략컨의와 경영자문 稅利處理는 세무박사

2026
5 MAY

안세회계법인	Accounting outsourcing	www.eAnSe.com	안건조세정보 상품안내
서울 829-7557, 7575(치리치리) 강남 516-4199, 서초 6245-7502 삼성 571-3700, 여의도 6859-2378 센트럴 2209-0710, 영등포 2633-9243 가산 2026-8838, 가산디지털 6011-5514 부산경남 051-322-8321 대전충청 042-525-5558 부산 051-819-3308 부산중앙 051-714-7227 부산서해 051-938-9677 경인 032-815-2641 일산 031-917-4189 송도 032-715-5376 울산 052-263-7006	◆ 회계 세무·재무·경리 포괄외주화 ◆ 회계감사 · 세무조정 · 재무경영자문 ◆ 재정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장기간행물 회원 사업(829-7575) ◆ 개별 기업방문교육훈련 및 관리 분야 전문강사 파견사업(재정고문)	세무·회계 30분내 Q & A 코너 ◦ 세무·회계·재정동영상강의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4 AP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6 JUN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안세 회계법인 안세			1 음3.15	2
3	4	5 어린이날, 임하	6	7	8 어버이날	9
10	11 변안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권 남부 주민세(중요원인) 신고납부 라저세(지방교육세·동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남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12	13	14	15 스승의날	16
17 음4.1	18	19	20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1 소만	22	23
24 부처님오신날	25 대체 휴일	26	27	28	29	30
31 음4.15						

아웃소싱, 기업가치향상, 경영권승계자료 829-7575
 절세전략건의와 경영지문 稅利處理는 세무박사

2026 JUN 6

안세회계법인 의 전국지점망 서울 829-7557, 7575(지리지리) 강남 516-4199, 서초 6245-7502 삼성 571-3700, 영등포 6859-2378 세트럴 2209-0710, 영등포 2633-9243 가산 2026-8838, 가산디지털 6011-5514 부산경남 051-322-8321 대전충청 042-525-5558 부산 051-819-3308 부산중앙 051-714-7227 부산세무 051-938-9677 경인 032-815-2641 일산 031-817-4189, 송도 032-715-5376 울산 052-263-7006	Accounting outsourcing ◆ 회계 세무·재무·경리 포괄외주화 ◆ 회계감사 · 세무조정 · 재무경영자문 ◆ 재정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장기인행물 화원 사업(829-7575) ◆ 개별 기업방문교육훈련 및 관리 분야 전문강사 파견사업(재경고문)	www.eAnSe.com 세무·회계 30분내 Q & A 코너 ◦ 세무·회계·재경동영상강의	안전조세정보 상품안내
---	---	--	------------------------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1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소득세납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포함), 교육세(금융투자소득세) 제1기분, 개별소득세(유류 등), 교통세(교육사 주형세 포함)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인출금공소는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 3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개별소득세(유류 등), 교통세(교육사 주형세 포함)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인출금공소는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 2026 지방선거 반민사득세(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조미세(중간임대) 신고납부 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증거대세 신고납부	4	5	6 현충일, 망종
7	8	9	10 반민사득세(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조미세(중간임대) 신고납부 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증거대세 신고납부	11	12	13
14	15	16	17	18	19 단오	20
21 하지	22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3	24	25 6.25 전쟁일	26	27
28	29 음5.15	30 3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개별소득세(유류 등), 교통세(교육사 주형세 포함)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인출금공소는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5 MAY S M T W T F S 202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 JUL S M T W T F S 202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아웃소싱, 기업가치향상, 경영권승계지문 829-7575
 稅務顧問 稅務處理는 세무박사

2026
 7 JUL

안세회계법인 서울 829-7557, 7575(치리치리) 강남 516-4199, 서초 6245-7502 삼성 571-3700, 영등포 6859-2378 세트렐 2209-0710, 영등포 2633-9243 가산 2026-8838, 가산디지털 6011-5514 부산경남 051-322-8321 대전충청 042-525-5558 부산 051-819-3308 부산중앙 051-714-7227 부산세텔 051-938-9677 경인 032-815-2641 일산 031-877-4189 송도 032-715-5376 울산 052-263-7006	Accounting outsourcing ◆ 회계 세무·재무·경리 포괄외주화 ◆ 회계감사 · 세무조정 · 재무경영자문 ◆ 재정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장기간행물 회원 사업(829-7575) ◆ 개별 기업방문교육훈련 및 관리 분야 전문강사 파견사업(재경고문)	www.eAnSe.com 세무·회계 30분내 Q & A 코너 ◦ 세무·회계·재경동영상강의	안건조세정보 상품안내
--	---	--	------------------------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6 JUN 2026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8 AUG 2026 S M T W T F 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안세회계법인	1	2	3	4
5	6	7 소서	8	9	10 법안·소득세(노동세 포함) 원전정수문 납부 조세(세 조세) 신고납부 관세(세 조세) 신고납부 관세(세 조세) 신고납부 관세(세 조세) 신고납부 관세(세 조세) 신고납부 관세(세 조세) 신고납부	11
12	13	14 음6.1	15 초복	16	17 제헌절	18
19	20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1	22	23 대서	24	25 중복
26	27 부가가치세 제1기분 확정신고납부 개별소비세 2분기 신고납부	28 음6.15	29	30	31 3월말 경사변인 법인세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개별소비세(유류 등) 조세(교육세 부양세 포함),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 부,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양공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양이 지급명세서 제출	

아웃소싱, 기업가치향상, 경영권승계자문 829-7575
 절세전략건의와 경영자문 稅利處理는 세무박사

2026 **8** AUG

안세회계법인의 전국지점망	Accounting outsourcing	www.eAnSe.com	안건조세정보 상품안내
서울 829-7557, 7575(지리지리) 강남 516-4199, 서초 6245-7502 삼성 571-3700, 여의도 6859-2378 센트럴 2209-0710, 영등포 2633-9243 가산 2026-8838, 가산디지털 6011-5514 부산경남 051-322-8321 대전충청 042-525-5558 부산 051-819-3308 부산영양 051-714-7227 부산세원 051-938-9677 강원 032-815-2641 일산 031-877-4189 충주 032-715-5376 울산 052-263-7006	◆ 회계 세무·재무·경리 포괄외주화 ◆ 회계감사 · 세무조정 · 재무경영자문 ◆ 재정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장기긴행물 화원 사업(829-7575) ◆ 개별 기업방문교육훈련 및 관리 분야 전문강사 파견사업(재경고문)	세무·회계 30분내 Q & A 코너 ◦ 세무·회계·재경동영상강의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안세 회계법인	7 JU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9 SEP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일추	8
9	10 빈인소독세(노동세 포함) 원천징수권 내부 주민세(중임원세) 신고납부 런저세(지방교육세·노동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11	12	13 음7.1	14 말복	15 광복절
16	17 대체 휴일	18	19	20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1	22
23 처서	24	25 부가가치세 제기본 환급(내국법인)	26	27 음7.15	28	29
30	31 12월과 1월의 빈인세 중간예납 주민세(중임원세) 신고납부 런저세(지방교육세·노동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빈인소독세(노동세 포함) 원천징수권 내부 주민세(중임원세) 신고납부 런저세(지방교육세·노동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아웃소싱, 기업가치향상, 경영권승계지문 829-7575
 절세전략건의와 경영지문 稅利處理는 세무박사

2026
 9 SEP

안세회계법인 의 전국지점망 서울 829-7557, 7575(치리치리) 강남 516-4199, 서초 6245-7502 삼성 571-3700, 영등포 6859-2378 세트럴 2209-0710, 영등포 2633-9243 가산 2026-8838, 가산디지털 6011-5514 부산경남 051-322-8321 대전충청 042-525-5558 부산 051-819-3308 부산영양 051-714-7227 부산세탁 051-938-9677 경인 032-815-2641 일산 031-817-4189 송도 032-715-5376 울산 052-263-7006	Accounting outsourcing ◆ 회계 세무·재무·경리 포괄외주화 ◆ 회계감사 ·세무조정·재무경영자문 ◆ 재정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장기간행물 회원 사업(829-7575) ◆ 개별 기업방문교육훈련 및 관리 분야 전문강사 파견사업(재경고문)	www.eAnSe.com 세무·회계 30분내 Q & A 코너 ◦ 세무·회계·재경동영상강의	안전조세정보 상품안내
--	--	--	------------------------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1	2	3	4	5
6	7 백로	8	9	10 비안스들세(특세 포함) 원정진수문 납부 곳미비(충청영안) 신고납부 관세(세관)세무(세관) 포항) 신고납부 탈법자 신고납부 중원공가세 신고납부	11 음8.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2	23 추분	24	25 추석 음8.15	26
27	28	29	30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영양권·경상남도·부산에 신고납부 가톨릭교회(유류세) 신고납부 교육세(교육세·주영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징명세서 제출			10 OCT S M T W T F S 2026 1 2 3 8 AUG S M T W T F S 2026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아웃소싱, 기업가치향상, 경영권승계지문 829-7575
 절세전략컨의와 경영지문 稅利處理는 세무박사

2026
 10 OCT

안세회계법인의 전국지점망 서울 829-7557, 7575(지리치리) 강남 516-4198, 서초 6245-7502 삼성 571-3700, 여의도 6859-2378 센트럴 2209-0710, 영등포 2633-9243 가산 2026-8838, 가산디지털 6011-5514 부산경남 051-322-8321 대전충청 042-525-5558 부산 051-819-3308 부산중앙 051-714-7227 부산서해 051-938-9677 강원 032-815-2641 울산 031-817-4189 송도 032-715-5376 울산 052-263-7006	Accounting outsourcing ◆ 회계 세무·재무·경리 포괄외주화 ◆ 회계감사 · 세무조정 · 재무경영자문 ◆ 재정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장기간행물 회원 사업(829-7575) ◆ 개별 기업방문교육훈련 및 관리 분야 전문강사 파견사업(재정고문)	www.eAnSe.com 세무·회계 30분내 Q & A 코너 ◦ 세무·회계·재정동영상강의	안전조세정보 상품안내
---	---	--	------------------------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9 SEP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1 NOV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안세 회계법인	7	8 한로	9 한글날	10
4	5 대체 휴일	6	7	8	9	10
11 음9.1	12 변인소득세(노동소득 포함), 원천징수권 남부 주민세(종합소득세 포함), 신고납부 라저세(지방교육세·노동소득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남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13	14	15	16	17
18	19	20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1	22	23	24
25 음9.15	26 부가가치세 제2기분 0영신고납부 개별소비세 3분기 신고납부	27	28	29	30	31

11 NOV 2026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1	2 6월만 결산법인 법인세법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개발소득세(오른 등) 신고납부 국채(국채보상법)에 포함) 자진신고납부 주식(주식소득세 포함) 신고납부 월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 법인소득세(분배 포함) 원천징수부 납부 국민연금(중상영납) 신고납부 과징금(과징금징수법)에 포함) 신고납부 월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납부 월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납부	4	5	6 7 임종	
8	9 음10.1	10 법인소득세(분배 포함) 원천징수부 납부 국민연금(중상영납) 신고납부 과징금(과징금징수법)에 포함) 신고납부 월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납부 월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납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담배소비세(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1
22 소월	23 음10.15	24	25	26	27	28
29	30 3월만 결산법인 법인세 중개연간 종합소득세 중개연간 세영 납부 종합소득세 중개연간 추계법 신고 종합소득세 중개연간 제3기분 개발소득세 (국채)에 포함) 신고납부 월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0 OCT S M T W T F S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2 DEC S M T W T F S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illegible]

아웃소싱, 기업가치향상, 경영권승계지문 829-7575
 절세전략건외 경영지문 税利處理는 세무박사

2026
 12 DEC

안세회계법인의 전국지점망 서울 829-7557, 7575(치리치리) 강남 516-4199, 서초 6245-7502 삼성 571-3700, 영등포 6859-2378 세트럴 2209-0710, 영등포 2633-9243 가산 2026-8838, 가산디지털 6011-5514 부산경남 051-322-8321 대전충청 042-525-5558 부산 051-819-3308 부산중앙 051-714-7227 부산세탁 051-938-9677 경인 032-815-2641 일산 031-917-4189 송도 032-715-5376 울산 052-263-7006	Accounting outsourcing ◆ 회계 세무·재무·경리 포괄외주화 ◆ 회계감사 · 세무조정 · 재무영역자문 ◆ 재정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장기간행물 회원 사업(829-7575) ◆ 개별 기업방문교육훈련 및 관리 분야 전문강사 파견사업(재경고문)	www.eAnSe.com 세무·회계 30분내 Q & A 코너 ◦ 세무·회계·재경동영상강의	안전조세정보 상품안내 
---	---	--	---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11 NOV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JAN S M T W T F 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31 25 26 27 28 29 30	1 8 7 대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2 9 음11.1	3 10 변이소득세(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퇴직연금(퇴직연금) 신고납부 관세(지리법정세, 관세, 포항) 신고납부 특별징수 신고납부 증원증거내세 신고납부	4 11 12	5 12
13	14 15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16	17	18	19	20
20	21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2 동지	23 음11.15	24	25 성탄절	26
27	28	29	30	31 연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제각분 납부 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교통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영웅군포수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6년 세무일지

※ 신고납부 등의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국기법 §50).

■ 1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12(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2025. 12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자진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2025. 12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2025. 12월 경륜·경정·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2025. 12월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농특세 포함) 자진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2025. 12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20(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2025. 12월 반출수입분
26(월)	부가가치세 제2기분 확정신고납부	부가세 §49	2025. 7월·12월 확정분
	개별소비세 4분기 신고납부	개소세 §9§10	2025년 4분기 판매반출분

■ 2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2(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기한	소득세 §65	2025년분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23	9월말 결산법인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2025. 12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2025. 12월 판매반출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2025. 11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5. 12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5. 12월분
10(화)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분 납부	법인세 §73§98, 소득세 §128	1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1월 급여지급분
	개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소득세 §78	2025년 귀속분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1월 경륜·경정·경마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마감일	법인세 §121	2025년(전년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1월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1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20(금)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1월 반출수입분
25(수)	부가가치세 제2기분 환급	부가세 §59	2025. 2기분(일반환급대상)

■ 3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3(화)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63	6월말 결산법인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1월 판매반출분
	교육세(금융보험업분) 제4기분 신고납부	교육세 §9	2025. 10월·12월 수익금액 해당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자진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1월 판매반출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2025. 12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6. 1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6. 1월분
10(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2월 원천징수분·연말정산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2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2월 경륜·경정·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2월 원천징수분·연말정산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2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지급명세서(근로소득분) 제출	소득세 §164	2025년 지급분
20(금)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2월 반출수입분
31(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등 (해외현지법인 자료 포함)	법인세 §60§64	2024. 12월말 결산법인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2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2월 판매반출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1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6. 2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6. 2월분

■ 4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10(금)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3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3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3월 경륜·경장·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3월분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3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20(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3월 반출수입분
25(금)	부가가치세 제1기분 예정신고납부	부가세 \$48	1월-3월분
30(목)	개별소비세 1분기 신고납부	개소세 \$9\$10	2026년 1분기 판매반출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세 \$103의23	2025년 1월-12월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3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3월 판매반출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2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6. 3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6. 3월분

■ 5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11(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4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4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4월 경륜·경장·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4월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4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20(수)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4월 반출수입분

■ 6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1(월)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63	9월말 결산(2025. 10월-2026. 3월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포함)	소득세 \$76\$110, 지방세 \$95	2025년 귀속 종합퇴직양도소득분
	교육세(금융보험업분) 제1기분 신고납부	교육세 \$9	1월-3월 수익분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4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4월 판매반출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3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6. 4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6. 4월분
10(수)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5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5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5월 경륜·경장·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5월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5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22(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5월 반출수입분
30(화)	3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세 \$60\$64	3월말 결산법인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5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신고납부	교통세 \$7, 지방세 \$137, 교육세 \$10	5월 판매반출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제1기분 납부	지방세 \$128\$152	2026년 제1기분(1월-6월) 고지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4월 출고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소득세 \$70	2025년 귀속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6. 5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6. 5월분

■7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10(금)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6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6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6월 경륜·경장·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6월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6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20(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6월 반출수입분
27(월)	부가가치세 제기분 확정신고납부	부가세 §49	1월~6월 거래분
	개별소비세 2분기 신고납부	개소비세 §9§10	2026년 2분기 판매반출분
31(금)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세 §103의23	3월말(2025. 4월~2026. 3월)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비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6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6월 판매반출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지방세 §115§152	건축물·선박·항공·주택(세액의 1/2) 해당고지분
	주민세 재산분 납부	지방세 §83§152	사업소 연면적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147§152(조례로 정함)	해당고지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5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6. 6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6. 6월분

■8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10(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7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7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7월 경륜·경장·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7월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7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20(목)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7월 반출수입분
25(화)	부가가치세 제기분 환급(내국법인)	부가세 §59	2026. 1기분(일반환급대상)
31(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63	12월말 결산법인 1월~6월 소득분
	교육세(금융보험업분) 신고납부	교육세 §9	2기분(4월~6월) 수익금액 합당분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지방세 §79§152	개인법인 균등할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비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7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7월 판매반출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6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6. 7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6. 7월분

■9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10(목)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8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8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8월 경륜·경장·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8월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8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21(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8월 반출수입분
30(수)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지방세 §115§152	토·주택(세액의 1/2) 해당고지분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세 §60§64	6월말 결산법인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비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8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8월 판매반출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7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6. 8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6. 8월분



■ 10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12(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9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9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9월 경륜·경장·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9월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9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20(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9월 반출수입분
26(월)	부가가치세 제2기분 예정신고납부	부가세 §48	7월-9월 거래분
	개별소비세 3분기 신고납부	개소비세 §9§10	2025년 3분기 판매반출분

■ 11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2(월)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세 §91103의23	2025. 7월-2026. 6월분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비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9월 판매반출분
2(월)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자진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9월 판매반출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8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6. 9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6. 9월분
10(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10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10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10월 경륜·경장·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10월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10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20(금)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10월 반출수입분
30(월)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63	4월-9월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소득세 §65	1월-6월 중간예납 기간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소득세 §65	1월-6월 중간예납 기간분
	교육세(금융·보험업분) 제3기분 신고납부	교육세 §9	7월-9월 수익금액 해당분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비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10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자진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10월 판매반출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통세 §10	9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6. 10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6. 10월분

■ 12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10(목)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11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11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11월 경륜·경장·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11월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11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15(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16	2026년 해당분(주택·토지)
21(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11월 반출수입분
31(목)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세 §60§64	9월말 결산법인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제2기분 납부	지방세 §128§152	2026년 제2기 (7월-12월) 고지분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비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11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자진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11월 판매반출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10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6. 11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6. 11월분

법정 4대보험의 개요 및 보험료 부담 계산·납부 방법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목적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따른 연금 지원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 재해의 구제
시행		1988.1	1977.7	1995.7	1964.7
사업장 적용		상시 1인 이상	상시 1인 이상	상시 1인 이상	상시 1인 이상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65세 미만자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가입 제외		1월 미만 근무자	1월 미만 근무자	사업주, 외국인	사업주 (예외적 가입 가능)
외국인 가입여부		원칙적 가입대상	※ 국가별 차등 적용 가입대상	가입을 희망할 경우에 가입 가능	가입대상
자격취득		입사일	입사일	입사일	입사일
자격상실		퇴직일의 다음날	퇴직일의 다음날	퇴직일의 다음날	퇴직일의 다음날
보 험 료	근로자	표준보수월액 ×4.75%	표준소득월액 ×3.595%	임금총액×0.9% (실업급여)	없음
	사용자	표준보수월액 ×4.75% 합 : 9.5%	표준소득월액 ×3.595% 합 : 7.19%	임금총액× 실업급여 : 0.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0.25~0.85% (사업규모별 차이)	임금총액× 0.007~0.553 (업종별 차이)
보장 내용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요양비 건강검진 장제비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08.7.1.이후)
주관 (수행)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 급여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업원분은 급여총액×0.5%(50명 초과인 사업장에 부과됨)

조세법 핵심개요

주요 세법개요의 내용은 2025년 12월 23일 현재까지 보도된 2025년 세법개정(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시는 최종 확정공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한 실수나 적용오류는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법인세법 개요·

1. 법인이 내야 하는 소득·이익에 대한 세금의 종류

법인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매년의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등 부동산 양도차익의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 법인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비교표와 같다.

· 각 소득원천별 과세여부 ·

과세소득별 법인유형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25%)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10~20%)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0%~25%)
내국영리법인	- 국내외의 모든 소득 2억 이하:10% 200억 이하:20% 3,000억 이하:22% 3,000억 초과:25% - 조합법인 등 : 당기순익×9%(20억원 초과분 12%)	-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 : 10% - 법인주택·주거용 건축물 양도차익 : 20%	- 해산(합병)시의 청산소득 - 조합법인 등 : 9%
비영리법인	국내외의 모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위와 같음 : 과세	납세의무 없음.(국가 귀속)
외국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위와 같음 : 과세	납세의무 없음.
법인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위와 같음 : 과세	납세의무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구조도(광의의 세무조정) ·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 표시)	+	협의의 세무조정(소득금액조정) ⊕가산항목 : ⊕익금산입⊕순금불산입 ⊖차감항목 : ⊖익금불산입⊖순금산입	=	각 사업연도소득 (1과세기간의 세무상 당기순이익)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15년전까지 인정) + 중소기업은 1년후 결손도 소급공제 환급하여 기납부세 환급됨.	-	비과세소득 (특별혜택항목)	-	소득공제 (특별공제항목)	=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대상금액)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2억 이하 : 10% 200억 이하 : 20% 3,000억 이하 : 22% 3,000억 초과 : 25% (중소·중견기업의 5억 이하 : 10%)	+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		×	세율 (10~20%)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	산출세액	-	면제·감면·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	중간예납 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된 세액	+	가산세액	=	자진신고 납부세액 (분납 1월(중소기업 2개월)·일시납)	

2. 매출·지출·비용·원가의 익금과 손금비교

항목구분	수입·수익항목	지출·비용항목
과세여부		
과세포함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순재산 증가거래, 이익창출항목, 모든 사업상의 영업수입금액, 수입수수료, 부동산임대주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수입 수익,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의 평가차익, 합병·분할차익, 보험업법상 고정자산 평가차익, 무상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 부채감소이익, 손금처리된 금액의 환입, 손금계상한 적립금 준비금 환입, 배당금과 분배금의지액, 폐기물예치금 반환액,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간주익금(차입금과다 부동산임대업 주사업자만 해당함), 토지재평가차익재원(1% 과세분)의 무상증자	손금불산입, 손비계상한 잉여금 처분액, 임원상여금과 퇴직금의 규정초과액, 법인세·외국납부조세·주민세 및 별과금·가산세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업무무관경비, 각종 충당금·준비금의 세무상 한도초과액, 주식할인발행차금, 자산평가차손, 건설자금이자,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소득귀속자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기부금 한도초과(5년내 이월손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 지급이자 불산입(업무무관, 비업무용 목적), 소비성 사업의 광고선전비
과제제외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액,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 이월익금, 고정자산의 평가차익과 재평가법상 재평가차익, 법인세 등 환급·충당액, 국제·지방세 과오납환급금 이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지분율에 따라 100-30% 과세 제외), 이월결손금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이익과 국고보조금, 채무면제이익, 합병차익(부동산)의 대응손금산입, 토지재평가차액의 손금산입 대응(1%분에 대해), 상생협력 수입배당금,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차익	순재산 감소거래, 제반원가항목, 원가, 업무상 귀속손비나 비용, 양도자산 장부가액, 원료의 매입가액, 공사원가, 부대비용, 판매부대비용, 매출할인·판매장려금, 광고선전비, 모든 인건비, 복리후생적 비용, 퇴직보험료, 수선비, 감가상각비, 자산입차료, 리스비용, 금융비용, 차입금이자, 대손금, 자산평가차손, 퇴직급여충당금 전입, 대손충당금 전입, 각종 준비금 및 충당금, 폐기물예치금 납부액, 유동화전문회사·증권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금지급액(배당가능이익×90% 이상 배당), 장식용 소액 미술품, 현물출자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구분	과세표준	세율
모든 내국·외국법인 (비영리법인 포함)	- 양도가액(실거래가액)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 직접 관련비용	법인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 10~20%(미등기 시 40%)
비영리 내국법인이 과표를 무신고하는 경우	- 소득법 §92, 기준시가 차액(혹은 실거래 차이)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250만원)	소득법 §104의 양도소득세율 적용(6~45%)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파산선고처분, 환지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인한 소득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구분	과세표준	세율
영리 내국법인	- 해산시 - 잔여재산 분배 후 사업계속 등기시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200억 이하 : 20% 200억 초과 : 22% (중소·중견기업의 5억 이하 : 10%)



5. 세액공제

구 분	요 건	공 제 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 §57)	-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도 포함) - 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영 참조) - 국내모기업이 출자(25% 이상)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내국법인이 5% 이상 출자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영위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세액공제제한도 ⇒ (법인세 산출세액 + 가산세) × $\frac{\text{국외원천소득}}{\text{과세표준금액}}$ - 추계에 의한 결정·경정시 적용배제(법 §68) - 공제한도초과액은 10년내 각 사업연도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
재해손실세액공제 (법 §58)	- 내국법인이 재해 등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때 1개월내에 신청요	- 공제액(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함) (법인세 산출세액 + 가산세 - 공제·감면세액) × $\frac{\text{상실된 자산가액}}{\text{사업용총자산가액}}$ - 사업용 자산가액에 토지는 제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법 §58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하여 경정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으로 법인세 환급을 받은 때	- 법인세액에서 5년간 순차적으로 공제 - 경정한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수정신고에 의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함.

7. 준비금과 충당금

구 분	요 건	적 립 범 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 §29)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목적	- 이자소득금액(소득 §16①, 비영업대금이자 제외) ⊕ 배당소득금액 ⊕ 복지용자 이자금액 ⊕ 수익사업소득금액의 50%(80%) -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 등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범위에서 손금산입
책임준비금 (법 §30)	보험업 영위법인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전보험계약 환급액 + 추정보험금 상당액 ⊕ 배당준비금(손금산입기준에 따른 적립금)
비상위험준비금 (법 §30)	국제회계기준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법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적합한 경우	-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의 경과보험료 × 금감위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 준비금의 누적액은 단기손해보험의 정미수입보험료 합계액의 50%(40%)를 한도로 함. -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적립금의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해약환급준비금 (법 §32)	보험업법에 따라 재무건전성 유지 위해 적립	해약환급적립액 신고조정 손금인정
대손충당금 (법 §34)	-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 -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의 기설정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 가능	채권장부가액 × 1%와 채권잔액 × 대손실적비율 (= 대손금 / 직전년 채권잔액) 금액 중 큰 금액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법 §35)	- 신용보증사업 영위법인 및 지역신용보증조합 - 임의상계 -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잔액의 1%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로 계산한 금액 - 적립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7. 법인세법상 가산세(법 제76조)

종 류	요 건	세 율
무신고(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 가산세 (국기법 §47의2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무기장 가산세와 동시 적용시 큰 금액을 적용함.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과소초과환급 가산세(국기법 §47의3①, §47의4)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	• 과소초과환급신고액×10%
부당과소무신고등 가산세(국기법 §47의2②, §47의3②)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부당과소무신고세액×40%와 수입금액×0.14% 중 큰 금액
무기장가산세 (법 §76①)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때	• 산출세액×20%와 수입금액×0.07% 중 큰 금액(산출세액 없는 경우 수입금액×0.07%)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국기법 §47의5)	세액의 미납·미달·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납부하거나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때	• (미납(과소납부)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기간 × 0.022%) ≤ 미납세액 × 10%
주주 등의 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법 §75의2)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법인이 미제출, 누락·불분명시	액면가액출자가액×0.5%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법 §75의2③)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때	•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1% ※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징수
기부금영수증발급 및 보관 불성실가산세 (법 §75의4)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의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5% •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2%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법 §75의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 미수취금액×2%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가산세 (법 §75의6)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5,000원
현금영수증가맹 및 발급불성실가산세 (법 §75의6)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시 수입금액×1%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5,000원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법 §75의7)	소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때	• 미제출(불분명)한 금액×1% (간이지급명세서는 0.25%(지연제출 0.125%)) ※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징수
계산서 미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법 §75의8)	계산서 미교부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 기재·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가산세	• 각 공급가액×0.5% (미발급·위장·가공·발급등 2%)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법 §75의9)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미제출시	• 유보소득금액×0.5%

•부가가치세법 개요•

1. 부가가치세법 개요

구 분	일 반 과 세 사 업 자	간 이 과 세 자
납 세 의 무 자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개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영리목적의 유무불문) 및 재화의 수입자 —제9조 : 재화의 공급 —제11조 : 용역의 공급 —제13조 : 재화의 수입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과 세 대 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재산적 가치있는 유체물·무체물, 사용소비되는 소모재화) — 화폐·수표·어음 등 화폐대용증권은 제외 - 전자적 용역 과세 : 해외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해외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에 간편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함.	
과 세 기 간	- 제1기⇨1월 1일~6월 30일 - 제2기⇨7월 1일~12월 31일	1월 1일~12월 31일
납 세 지	- 각 사업장마다 납부 - 총괄납부사업자는 주된 사업장(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만 신청하여 총괄 납부가능함(신고서는 각 사업장 세액은 ⊕⊕ 상계하여 납부).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일화 및 세금계산서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가능하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총괄신고납부 가능함.	
면 세	면제되는 재화·용역⇨영 §34·영 §58	
영 세 율	- 수출하는 재화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일반과세자와 같이 적용
과 세 표 준	부가세 10%가 불포함 순공급가액 - 금전 대가 수령시⇨그 대가 - 금전 이외의 대가 수령시⇨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부담대가 수령 또는 대가없는 경우⇨시가 - 폐업시 재고자산⇨시가 - 공급시기의 외화환산가액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 과세표준 불산입금액 - 에누리액 - 환입된 재화의 가액, 반품금액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손괴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 재화·용역 공급후의 할인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급대가 재화·용역 공급대가 아닌 것 - 협회비·찬조금·특별회비 - 원자재 공급받아 포함시키는 금액 - 공급확정후의 환율차액

구 분	일 반 과 세 사 업 자	간 이 과 세 자										
세 율	◦ 매출액×10%, 매입액×10%	◦ 매출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율×10%										
신고·납부	◦ 예정신고기간 ↳제1기 : 1월 1일~3월 31일 ↳제2기 : 7월 1일~9월 30일 ◦ 예정신고납부 ↳제1기 : 4월 25일(외국법인도 동일) ↳제2기 : 10월 25일(외국법인도 동일) * 직전과세기간부터 계속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하의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 고지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정고지 생략 * 재화의 수입에 따라 관세의 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함. ◦ 확정신고납부 ↳제1기 : 7월 25일 ↳제2기 : 익연도 1월 25일 * 폐업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 각 3개월마다의 자진예정신고 안하고 또한 세무서의 예정고지없이 자진확정신고만 함. ◦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의무 없음. ※사업서비스업 등 관련 사업자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해야 함.										
	◦ 매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 교부·신고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환 급	◦ 조기환급↳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신고기한 경과후 15일내 환급),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중인 사업자 ◦ 일반환급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확정신고기한후 30일내 환급)	◦ 없 음.										
세 액	◦ 공급가액×10%—취취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공급대가×업종별 부가율×10%)—(매입액×0.5%) ◦위 두 겸영시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에 위 율을 각각 적용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table><tr><th>업 종</th><th>부가가치율</th></tr><tr><td>전기·가스·증기·수도</td><td>5%</td></tr><tr><td>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td><td>10%</td></tr><tr><td>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td><td>20%</td></tr><tr><td>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td><td>30%</td></tr></table>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세액공제 등	◦ 대손세액공제(법 §45)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 재고매입세액공제(법 §44)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전환당시의 재고품·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영 §63의2가 정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조특법 §108)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취득가액으로 103분의 3 공제(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 ◦ 의제매입세액공제(법 §42) —부가세 면제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구입액의 2/102, 음식점업은 6/106(개인 8/108, 2억 이하 개인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중소기업 4/104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등 관련 매입세액공제(법 §46)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전자화폐발행세액 공제를 1.3%, 0.65%(연 1,000만원 한도), 법인 및 일정금액 초과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소매·음식·숙박업 등의 개인사업자만 적용 해당											



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공통요건 및 관련규정 등

구 분	개념 및 요건방법	관련규정 및 적용예시
거 래 시 점	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한 과세대상 재화·용역	법률 부칙(93. 12. 31 신설) 제2조(일반적 적용례)
공 제 가 능 기 간	재화·용역 공급일부터 3년 또는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금액	- 시행령 제87조제2항 : 재화·용역공급일(세금계산서 거래일자)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적용함. 2018. 7. 1 공급된 것이면 만 3년이 되는 2021년 하반기가 과세기간이므로 2022년 1월 25일까지 대손확정된 것이면 가능
대 손 세 액 공 제 시 점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매출세액에서 빼줌(즉, 소멸시효된 날 등 대손확정된 날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점에 차감하고 납부세액 계산함).	법 제45조제1항(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가 아니고 확정신고서 제출하는 때에 신청함 : 시행령 제87조제2항)
대 손 확 정 일	거래상대방의 파산선고일, 강제집행일, 사망·실종 선고일,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일(상법 제64조는 5년간, 단서의 규정에 의거 민사 단기소멸시효규정 제163조 적용으로 3년간임), 수표·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된 시점(부도어음·수표는 부도일 6개월이 되는 날(만 6개월), 혹은 이때를 지나쳤다면 외상거래에 대한 단기소멸 시효일인 3년이 되는 때도 가능함.)	- 시행령 제87조제1항 - 적용례 ① 어음(제3자 발행승계어음도 해당)·수표·거래·부도방 찍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확정신고기간 ② 일반외상거래 : 매출(인도·세금계산서날)일부터 만 3년이 되는 확정신고기간(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나 민법상 단기소멸 시효인 3년 우선 적용) ③ 회사가 원하면 일반 상거래도 단기 소멸시효 적용으로 만 3년이 되는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 공제가능
대 손 세 액 공 제 계 산	부가가치세 포함 총 대손금액(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 인정금액 : 시효완성금액)×10/110	법 제45조제1항(회수못한 금액을 세금 등으로 지정하더라도 안분함)

3. 부가가치세의 각 위반유형별 가산세 요약

유 형	가산세 적용 사유	기 준 금 액	가 산 세
사업자미등록	사업자등록을 기한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기간(혹은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	당해 공급가액	2%
세금계산서부실기재교부 가산세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경과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 발급 - 착오 또는 과실로 공급세금계산서를 부실기재·허위기재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둘 이상의 사업장 보유시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당해 공급가액	1%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가산세	발급일 경과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당해 공급가액	0.3%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발급일의 경과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	당해 공급가액	0.5%
세금계산서미발급·허위발급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세금계산서 미발급	당해 공급가액	2%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3%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2%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가산세 지연제출	본문 : 1. 합계표 미제출 2. 부실기재·허위기재 3. 매출처별 합계표 기재사항 착오(미확인)문제	당해 공급가액	0.5%
			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 합계표에 의하지 않거나 과다기재 ◦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 등록번호 착오기재(확인되는 부분) ◦ 공급가액 부실기재	당해 공급가액 (예정신고 매입자료가 확정신고시 제출·신고되어도 가산세불이익 없음)	0.5%
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비사업자가 거래없이 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당해 공급가액	2%
신용카드매출전표가산 세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 예정·확정신고기한내 적법히 제출하지 않고 경정기관확인후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의 과다신고		0.5%
현금매출명세서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 세서 미제출가산세	전문직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부실기재 제출한 경우	당해 수입금액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	당해 세액	10%
	무신고시		20%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		40%
	신고후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세액×기간× 하루당 0.022%
영세율적용 과표신고 불성실가산세	영세율적용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당해 공급가액	0.5%

(가산세의 이중적용 배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가산세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중적용을 배제한다.

- 사업자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 결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및 매출합계표 불성실제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 미발급·허위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제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기재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와 전자세금명세서 교부명세 기한 후 전송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적용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적용 배제함.



4. 영세율과 면세의 세무절차 비교

구 분	면세적용사업자	영세율적용사업자
사업자등록의무	없음(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등록의무 있음).	있 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발급의무 있음).	있음(내국신용장 공급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등, 해외직접수출시 발급의무면제됨. 원하면 작성·발급해야 함).
거래징수의무	없 음.	있음(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영이 됨).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의무	없 음.	있 음.
납부세액의 계산	매출세액은 없으며, 매입세액도 공제 또는 환급이 되지 아니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함.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	있음(미제출의 경우 불이익 처분이 없음).	있 음.
대리납부의무	있 음.	있 음.
기장의무	없음(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장의무 있음).	있 음.
금전등록기 설치의무	없음(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금전등록기 설치의무가 있음).	있 음.
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함.	적용됨.

5. 세금계산서 작성·발급 관련 세법상 요건과 규제

(재화·용역공급자 측면에서의 불이익)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필요기재사항의 누락, 사실과 다른 기재, 미발급, 허위발급, 타인명의 발급
 - － 공급가액의 1% 또는 2%·3%의 가산세가 부과됨.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기한후 전송)
 - － 0.5%(0.3%)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누락기재, 사실과 다른 기재
 - － 해당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 부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의 무신고 미납부, 불성실신고
 - － 무신고납부세액·미납부세액×10%(20%, 40%)의 가산세 부과, 신고후미납·과소납 : 세액×기간×하루 10만분의 22
-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해당공급가액×10%의 부가가치세 본세를 추징하며 상기의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미납부가산세·미교부가산세 등)
-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처벌-조세범처벌법상 1년 징역이나 세금의 2배 벌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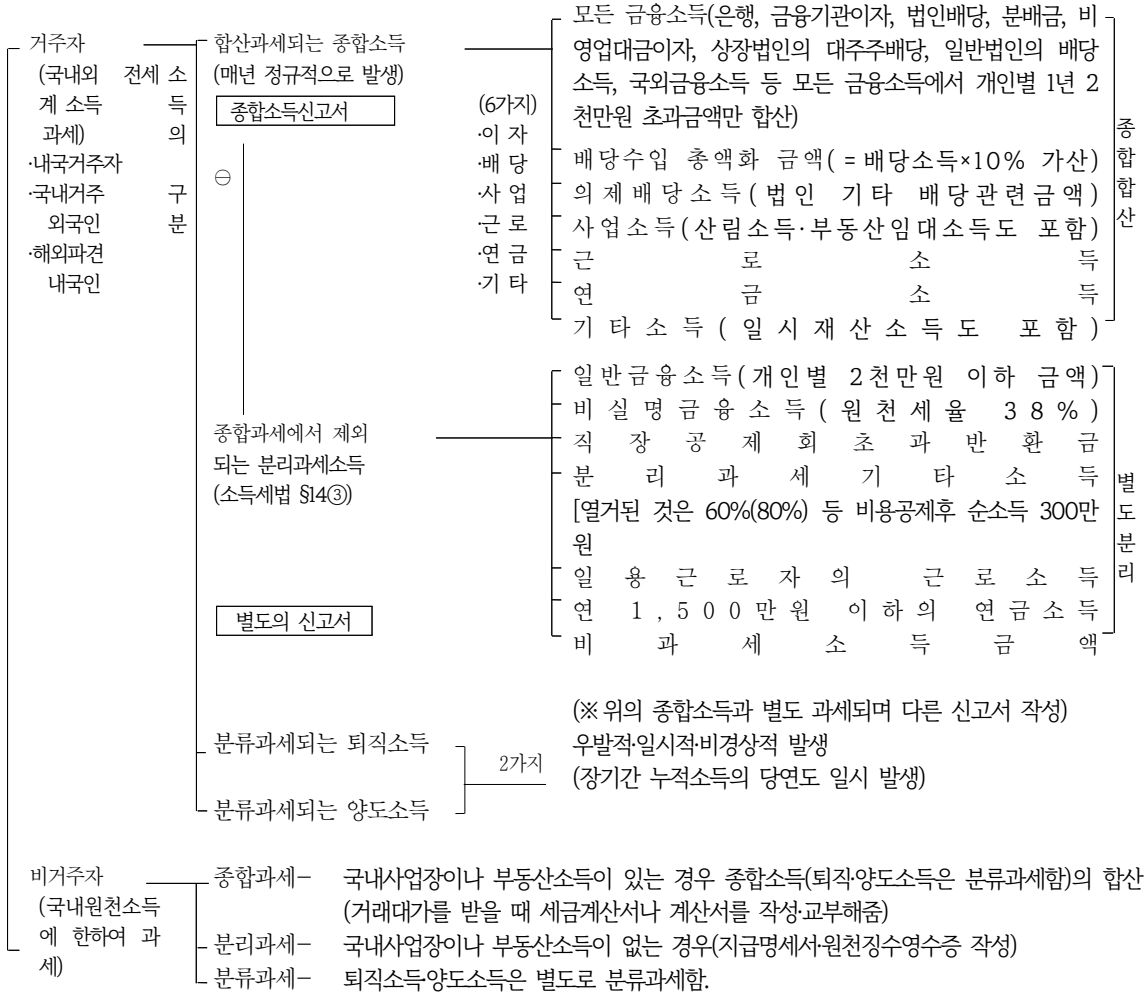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 측면에서의 불이익)

- 매입세금계산서없이 공제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매입가액의 0.5%의 가산세 부과
-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매입세액공제가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경우-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매입세액공제 적용신고·납부되었다면 추징됨.
- 세금계산서를 억지로 교부받지 않는 경우-3년 징역이나 100만원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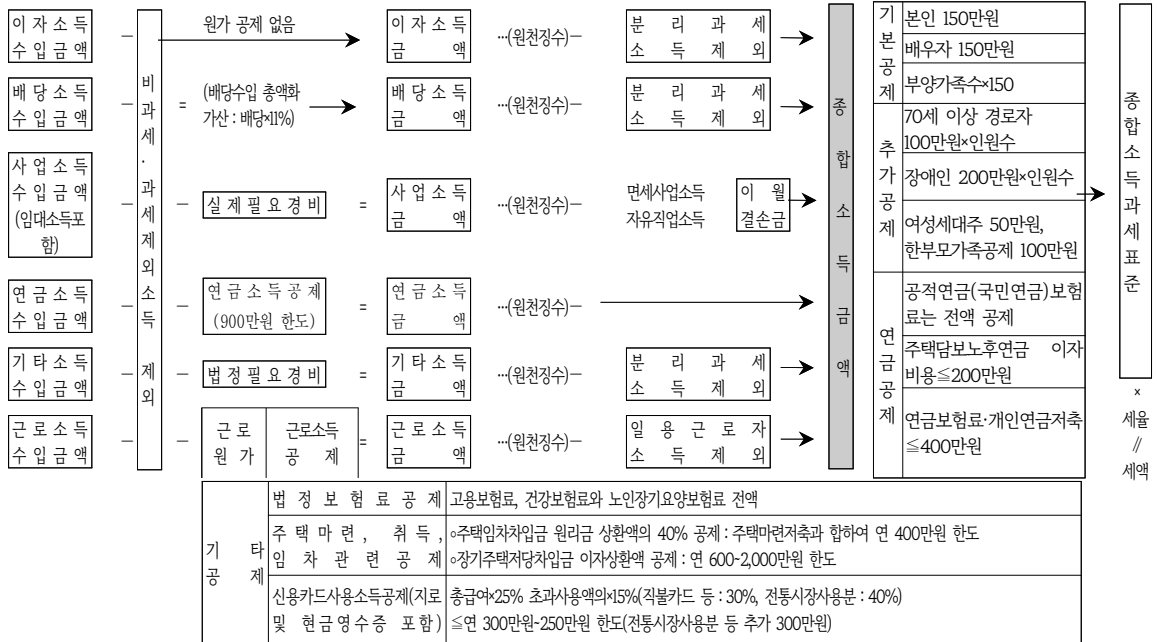
• 소득세법 개요 •

1. 과세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의 종합 도해 설명

※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현재의 위헌판결(2001헌바82, 2002. 8. 29)로 부동산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의 부부합산과세는 폐지되었으며, 부부 각자의 명목과 실질소득원천대로 각각 합계하여 따로 계산함(부부별산제).



2.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흐름도



구분(공제순)	공제	범위
배당소득공제(법 §56)	- 법 §17①1.~4. 배당소득에 대하여 공제(배당소득 총액화 가산후 공제) - 당해 배당소득의 100분의 10 상당액만 공제 - 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배당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기장소득공제(법 §56의2)	간편장부대상 복식부기시 20% 공제(100만원 한도)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법 §56의3)	전자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100만원 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법 §57)	- 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법 §118의6)→양도소득산출세액×(국외자산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	
재해손실세액공제(법 §58)	- 재해상실비율이 20% 이상인 때 - 재해발생연도에 납부할 소득세(가산세액 포함)×상실비율(재해손실가액을 한도로 함)	
근로소득세액공제(법 §59) (납세조합가입자 포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30% + 71만5천원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천만원 이하 66만원, 1억2천만원 이하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만원 한도)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시는 일률적으로 55%씩 세액공제(한도 : 연 500,000원)	
자녀세액공제(법 §59의2)	- 출산·입양자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자녀 1~2명은 25~30만원/명, 3명 이상은 40만원/명	
연금저축·퇴직연금(법 §59의3)	불입액의 12%(15%)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법 §59의4)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 총급여 3% 초과금액의 15% 세액공제 - 기부금 사용액 15%(30%) 세액공제	- 사용액 15% 세액공제 - 보험료 12% 세액공제

3.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6%~45%의 8단계 초과소득 누진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적 용 세 율
○1,400만원까지	○6%(=과세표준×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까지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까지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까지	○3,706만원 + 1억5,000만원 초과액×38%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9,406만원 + 3억원 초과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액×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45%

* 근로소득의 경우 세액공제 비율 : 세액×30% 공제(산출세액 130만원까지는 55% 공제, 산식 : [산출세액-130만원]×30% + 130만원×55%), 세액공제 계산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74만원-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함.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 하루 일당 15만원씩 공제후 일괄 6%를 곱하여 55% 세액공제함.
 세액=(일당-15만원)×6%×45%(세액공제 적용비율 55% 차감 후인 45%)

4.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계산흐름도

㉠ 퇴직소득-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연분) ㉠×근속연수×12	
㉢ (㉡-환산급여 차등공제)×기본세율(6-45%)	
환산급여	차등공제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7,000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 (연승) ㉢×12×근속연수	

5.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흐름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

= {양도가액(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양도자산취득가액, 취득기준시가 + 설비비·개량비 + 자본적 지출 + 양도비)} (양도차익이라 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세율 •

일반양도소득 과세표준	적 용 세 율
○1,400만원까지	○6%(=과세표준×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까지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까지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까지	○3,706만원 + 1억5,000만원 초과액×38%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9,406만원 + 3억원 초과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액×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45%

특 별 양 도 소 득	적 용 세 율
· 미등기 양도자산(입주권 포함) : 70% · 1년 미만 보유자산 : 50%(주택·입주권·분양권은 7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산 : 40%(주택·입주권·분양권은 60%) · 1세대3주택, 1세대2주택도 일반세율(6~45%) 적용 · 비상업용토지 : 16%~55% · 조정지역내 주택입주권 : 60%~70% · 조정지역내 1세대2주택 : 일반세율 + 20% · 조정지역내 1세대3주택 : 일반세율 + 30%	· 주권상장주식(코스닥상장 포함) —소액주주 양도 : 비과세 —대기업 고액주주 1년 미만 보유 : 30% —대기업주식 1년 이상 보유 : 20%(25%) —중소기업 주식 : 10%(고액주주 20%) · 비상장주식 —대기업 고액주주 1년 미만 보유 : 30% —대기업 고액주주 1년 이상 보유 : 20%(25%) —대기업 소액주주 : 20% —중소기업 주식 : 10%(고액주주 20%) · 파생상품 : 20% · 신탁수익권 : 20%(25%)

주식관련 양도소득세율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 주		법 인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비상장 일반법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일반중소기업	
고객 주주	1년 미만 보유양도			30%	20%	30%	20%	30%	20%
	3억 이하			20%	20%	20%	20%	20%	20%
	3억 초과			25%		25%		25%	
일반 주주(장외거래)				20%	10%	20%	10%	20%	10%
일반 주주(장내거래)				0%	0%	0%	0%	20%	10%

6. 소득세 신고납부기간·기한과 가산세 등 비교요약

유 형 소구분	과세 기간	납세의무 성 립 일	신고납부 기 한	납세의무 확 정 일	기한후의 가산세율	비고 및 특기사항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 확정신고	1. 1~ 12. 31	매년 12. 31	차년 5. 31	자진신고 납부일 (5. 31)	무신고 20%(과소신고 10%, 부당한 방법으로 미신고·과소신고는 40%) 가산세 + 미납부액×이자율(하루 10만분의 22)	어떤 개인이라도 과세기간 모두 동일함.
근로소득 연말정산	1. 1~ 12. 31	매년 12. 31	매월 10일 연말정산은 차년 3월 10일	2월 말일 (원천징수일)	3% + 미납부기간 하루당 0.022%≤세액×10%	소득지급시마다 징수납부함.
양도소득 예정신고 (토지매각 예정신고)	각 양도 시점	양도일 말일 예정신고도 필수임.	다음다음월 말일(부담부증여시는 3개월) 주식은 반기말 + 2달	자진신고 납부일	무신고 20%(과소신고 10%, 부당한 방법으로 미신고·과소신고는 40%) 가산세 + 미납부액×이자율(하루 10만분의 22)	각 양도소득을 1년간 합산함.

이자배당 등 분리소득	각 지급 시점	각 지급시점	다음달 10일	각 지급시점	3% + 미납부기간 하루당 0.022% ≤ 세액 ≤ 10%	각 소득을 1년간 합산함.
납세조합 가입소득	1. 1- 12. 31	발생월 다음달 말일	징수월 다음달 10일	발생월 다음달 말일	5%	각 소득을 1년간 합산함.

7.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 등 개요

연간 근로소득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연 240만원 이내) • 출산지원금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근로소득 공제	총급여액		공제율		• 공제한도 : 2,000만원	
	500만원 이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5%			
1억 초과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활용					
(-)인적공제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출생·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200만원	10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등 직역연금)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전액 공제)					
(-)기타공제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월세액 공제금액과 합하여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600~2,0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투자액에 따라 100~30%)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제로페이 이용분 40%·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의 경우 30%)를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0%와 급여수준별 400만원·25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사용분(제로페이 포함), 대중교통, 문화·체육·공연·미술관 이용분 추가 300만원)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400만원 한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기타공제)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1,53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5)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2명은 25·30만원/명, 3명 이상은 40만원/명 • 출산·입양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금액의 15% 세액공제 • 교육비 : 사용액 15% 세액공제 • 기부금 : 기부금 사용액 15%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12% 세액공제 • 연금저축·퇴직연금 : 불입액의 12%(15%) 세액공제 • 표준공제 : 근로자 13만원, 사업자 7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0~3300만원한도 74만원, 3300만~7000만원한도 66만원, 7000만원~1.2억한도 50만원, 1.2억원 초과한도 20만원 • 정치자금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91% 10만원 이상 15% 세액공제 • 미분양 주택이자 : 10만원 이하 91% 10만원 이상 15% 세액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금액)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중(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8. 인적자원조달, 인력채용, 고용, 사람활용방법과 보수지급

소득구분계약	대상범위 및 개념	법적지급의무 금액들	세무상 절차
근로소득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일반직원, 직장인, 정규상근직원, 상근임원 등 종속적 고용관계	◦월급·연봉·상여금·보너스·성과급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퇴직금·전환금	◦근로소득원천징수 ◦법인부담분은 비용 인정, 개인부담분은 소득공제(공과금처리 개인부담분은 소득공제 안됨)
퇴직소득 (근로계약, 근로법)	일반직원, 직장인, 정규상근직원, 상근임원 등 종속적 고용관계	근퇴법이나 퇴직급여규정·사규 등에 따른 퇴직금(= 평균급여×근속연수의 기준율)	퇴직소득원천징수(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분류 과세됨)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일당직	하루 일당×근무일수	일별원천징수(기본 15만원 공제), 명세작성, 연말정산은 안함.
사업소득 (자유직업적 사업소득)	부가세 면제 인적용역서비스 ◦독립적 고용관계 ◦비상근 임원 ◦외부전문가 고문계약(국선변호·법률구조 등) ◦모집수당 인센티브 및 계속적 수입	◦계약된 자문보수 ◦비상근 임원이라도 근무일수나 기여도에 따라 보수지급 가능(근로소득으로 처리함)이 일반적임. ◦비상근 임원보수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용역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자유직업소득 가능함.	부가세 면제되는 개인적 용역수입의 3%를 사업소득원천징수한 후, 수입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신고납부함(부가세 과세사업 전문면허직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자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아님).

	3.3% 원천징수후 종합소득합산 가능활동 및 직업의 범위 등(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	의료보건(의사 등 유사의료전문직, 약사수의사, 각종 보건서비스), 저술작곡, 연예, 직업운동, 금융모집수당, 1인 자기고용 독립성과수당, 강연, 관상, 동물조련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 아니고 세금 계산서 발행이 원칙인 활동·직업 용역 등)	의사 이외의 각종 전문자격사 사업(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연구기술 용역 등)
	5.5% 원천징수로 과세종결	접대부, 댄서, 봉사료 등
기타소득 (열거된 것)	◦외부강사, 저자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일시 원고료, 기고료, 강연료, 출연 료, 사례금, 전속계약금,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퇴직후 직무반영보 상금, 일시재산소득 등
기타소득 (열거안된 것)	일시적 인적용역대가(독립적비 정규직)	수입×40%×20%를 원천징수함(즉, 8%(지방소득세까지는 8.8%)만으로 분리과세 종결됨).
용역대가 (법인수입)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수입×20%를 원천징수함. (당첨금 3억 이상은 30%)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가를 전 액 지급함.

9. 각종 소득에 대한 원가인정금액과 적용세율 등

소득구분	종속적 정규근로자(내부인)		독립적 자유근로자 (계약직, 외부인)	기타소득 등
항 목	근 로 소 득	퇴 직 소 득		
총 대 가	급여·보수·상여·월급·근로 소득 등	퇴직으로 인해 계산 되는 금액	각 업무수행대가	일시적·우발적 금액
필요경비인정범위 와 종류(40대 중견소득자, 4인 가족 기준)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 1년에 약 2,400만원 ◦일용근로소득은 매월당 15만원씩 개별공제후 6% 단일 세율 적용 (55% 세액공제)	◦퇴직소득에서 근속 연수 공제후 연분 계산하고 세율 곱 한 뒤 다시 연승 계산 ◦퇴직소득 수준별로 차등과세	◦실제기장에 의한 필요경비 공제 ◦대부분의 전문·자유직업 소 득자들은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실제발생주요경 비(임차료·인건비·매입가액 등) + 매출수입×기준경비율	◦보상금, 주택임주지체상금, 서화·골동품양도 등 : 필요경 비 80% ◦산업권리·기술료, 문예창작, 인적용역 : 필요경비 60% ◦나머지 열거 안된 기타소 득 : 실제경비 반영함. ◦복권소득의 필요비용은 없음.
적용세율과 과세방법	6%~45% 적용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55%, 30% 세액공제)	6%~45% 적용으로 분류 단독과세	6%~45% 적용하여 다른 중 합소득과 합산과세	세율 20%로 원천징수하며, 연 3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로 종결
적용요점과 세금부담 분석 및 비교	50만원 세액공제(연봉 4,600만원 자인 경우 2,400만원 공제한 과세 표준은 2,200만원, 1,200 만원까지 6%, 나머지는 15%)	세액공제 없음	세액공제 없음(실제입증대응 경비 + 기준경비(=수입액×기 준경비율)가 인정되므로 다 른 소득자에 비해 비용인정 비율이 높을 수도 있어 세금 부담이 적은 편임).	◦연 300만원 이하시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 ◦열거된 일시·우발소득은 대 부분 총 지급금액의 8%가 세금이므로 저렴함 (=40%×20%).
담세율 비교	제일 높음.	낮은 편임.	낮은 편임.	보통 정도

10. 소득종류와 적용세율 및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의 종류 등

소득구분	소득자 유형	과 세 금 액	적 용 세 율	원천징수영수증의 명칭
근로소득	일반근로자, 월급자	소득공제후 과표(약 2,000만원~2,500만원 공제)	6%~45% (55%, 30% 세액공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부, 급여대 장, 연 50만원~74만원까지 세액공제



	일용근로자, 일당자	일당 150,000원 공제	6% (55% 세액공제)	원천징수영수증 면제, 소득기록만 비치함. 일용근로소득자 급여지급대장
	외화급여자, 외국인 등	소득공제후 과표	6%-4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부
퇴직소득	직장퇴직자, 퇴사자(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포함)	연도별 개산금액공제 +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	6%-45%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이자소득	일반금융이자	전 액	14%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3부(이자소득 표시) 14% 세율을 적용받는 일반금융기관이 자소득은 분리과세원천징수되며, 개인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합산과세됨. 30% 이상 세율적용소득은 분리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등		비과세	
	비영업대금, 사채이자	전 액	25%	
	실명미확인	전 액	45%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	1천만원까지	9%	
	실명법 위반가명 등	전 액	90% (특정채권 20%)	
	장기채권	전 액	30%(분리)	
배당소득	일반배당소득(대주주 등) 등 모든 배당	전 액	14%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3부(배당소득 표시) 10% 세율 적용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됨. - 연 배당 2천만원 초과금액은 종합소득 합산과세됨. 상장법인 대주주 배당과 비상장법인 일반 주주배당도 일반금융소득과 함께 2천만원 초과 개념이 적용되어 무조건 종합합산함. 30% 이상 세율 적용된 분리과세소득은 이미 최고세율 부담했으므로 합산 안함.
	실명미확인	전 액	45%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1인당 1억원 이하 투자신탁	5%	
	소액주주의 장기보유(1년 이상) 우리사주배당	전 액	비과세	
	영농·영여조합법인(종합과세 제외)	1,200만원까지	비과세	
	실명법 위반 차명 등	전 액	1,200만원 초과 90%	
사업소득	개인적 인적용역제공자(전문면허직업자 제외) 등, 프리랜서, 부가세면세용역해당자만	전 액	3%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부 -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종합소득신고
기타소득	기타의 용역공급자(열거된 일사·우발 기타소득은 60%(80%) 비용공제)	열거 안된 것은 전액 혹은 열거된 것은 60% (80%) 뺀 후 나머지 과세	20%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3부(기타소득 표시) - 복권소득 등 분리과세
봉사료 수입	일반사업자(법인 포함)	세금계산서 등 거래가액의 20% 초과액	봉사료 수입금액 5%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 부가세 10%는 과세됨.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 등 각종 연금, 개인연금소득	전 액	6%-45% (사적연금소득·퇴직연금은 총지급액×3-5%만 과세함)	
외국인 등의 국내원천소득	제반 소득지급	전액 등	각 세법의 세율≤조세협약상 제한세율 (10%-15%)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3부(비거주자 표시, 각 소득 유형 구분 표시)

* 각 세율금액에 지방소득세 10%를 합산하여야 총세율이 됨.

· 조세특례제한법 개요 ·

1. 소득공제 ⇨ 최저한세(법 §132) 적용

구 분	적 용 요 건	공제율방법	비 고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 §1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에 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 익증권·벤처기업·창업벤처전문PEF 등에 투자	출자 또는 투자액의 10%(벤처기업에 투 자 및 출자·출자금액에 따라 30%-100%)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2028. 12. 31까지 출자 또는 투자분까지 적용(타인의 출자지분 등 양수로 투자 시 제외)
②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 공제 (법 §30의3)	상시근로자 1인당 사급이 감소하지 아니 하고 근로자수 유지 및 임금감소한 경우	◦근로자 : 임금감소액의 50% ◦중소기업 : 임금감소액×10% + 임금보전 액×15%	◦2026. 12. 31까지 적용
③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소득공제 (법 §88의4)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 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액(400만원 한도)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공 제
④ 성실사업자 의료비등 공제 (법 §122의3)	복식장부 기장·비치자, 연평균 수입금액 초과자, 2년 이상 계속 사업자 및 성실신 고확인 대상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15% (미숙아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2026. 12. 31까지 소득분 에 공제
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근로소득공제 (법 §126의2)	근로소득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 터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체크카드) 등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액과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총 급여의 25% 초과 금액의 15%(30% 40%) 해당 금액(연간 400만원-250만 원 한도, 전통시장사용분 등 추가 300 만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 분(근로소득개인만 적용) ◦공제신청요

2. 세액공제 ⇨ 최저한세 적용, 중복지원배제(법 §127) 적용

구 분	공 제 금 내 역								
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법 §7의4)	◦중견·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 지급기한 15일내 지급금액×0.5% - 지급기한 15일 초과-30일내 지급금액×0.3% - 지급기한 30일 초과-60일내 지급금액×0.15% * 세액공제 한도 : 법인세의 10%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위 한 자금 출연시 세액공제(법 §8의3)	◦출연금×10% -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③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 제 * 적용시 유의사항(표하단) (법 §1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일 반 기 업</th><th style="text-align: center;">중 소 기 업</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R&D비용</td><td style="text-align: center;">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성장·원천기술</td><td style="text-align: center;">20-30% 30-4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가전략기술</td><td style="text-align: center;">30-40% 40%/50%</td></tr> </tbody> </table> 위 해당·선택 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25% ② 당해연도 R&D비용×기분 0%+최대 2%(매출 액 대비 R&D 비중의 1/2) 위 해당·선택 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발생액초과금액×50% ② 당해연도 R&D비용×25%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를 단계적 인하 -중소기업 졸업 이후(유예기간 포함) 3년간 20-35%, 그 이후 2년간 15-30%	일 반 기 업	중 소 기 업	R&D비용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일 반 기 업	중 소 기 업								
R&D비용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③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 제 * 적용시 유의사항(표하단) (법 §10)	※ 중견기업 공제를 신설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40% ② 당해연도 R&D비용×8% ☞ 중견기업(조특령 §9④)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4.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미만								



④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12②)	○ 특허권 등 취득금액×5%(중소기업 10%) (법인세의 10% 한도) * 중소기업외의 지역 취득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취득으로 한정																																										
⑤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의3)	○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⑥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법 §12의4)	○ 주식 등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5%																																										
⑦ 소재·부품·전기기업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법 §13의3)	○ 소재·부품·장비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취득시 취득가액의 5%																																										
⑧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법 §19)	○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10%																																										
⑨ 통합투자세액공제 (법 §24)	○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시 적용 <table><tr><th rowspan="2">시설투자(%)</th><th colspan="3">당기분</th><th rowspan="2">증가분</th></tr><tr><th>대기업</th><th>중견기업</th><th>중소기업</th></tr><tr><td>일반</td><td>1</td><td>5</td><td>10</td><td>10</td></tr><tr><td>신성장·원천기술</td><td>3</td><td>6</td><td>12</td><td>10</td></tr><tr><td>국가전략기술</td><td>15</td><td>15</td><td>25</td><td>10</td></tr></table>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10	국가전략기술	15	15	25	10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10																																							
국가전략기술	15	15	25	10																																							
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법 §25의6)	○ 영상콘텐츠 제작금액×10%(중소기업 15%) * 공제시기 : 방송영화상영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⑪ 웹툰콘텐츠제작비용 세액공제 (법 §25의8)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10%(중소기업 15%) * 공제시기 :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																																										
⑫ 스마트공장 감가상각비 투여 (법 §28의5)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산 취득시 결산때 손비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산입																																										
⑬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의3)	○ 중소기업이 재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30%(중견 15%) * 2015.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⑭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의4)	○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20% (중견기업 10%) ○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의 합계×20%(중견기업 10%)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적용																																										
⑮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의7)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아래 금액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중소기업</th><th rowspan="2">중견기업</th><th rowspan="2">대기업</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상시근로자</td><td>700</td><td>770</td><td>450</td><td></td></tr><tr><td>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td><td>1,100</td><td>1,200 (1,300)</td><td>800 (900)</td><td>400 (500)</td></tr></table> * 21~22년 고용증가분에 대해서는 지방에 한해 ()금액 한시적용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해도 세액공제 적용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100	1,200 (1,300)	800 (900)	400 (500)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100	1,200 (1,300)	800 (900)	400 (500)																																							
⑯ 통합고용세액공제 (법 §29의8)	○ 상시근로자* 증가분 *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인당 세액공제액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table><tr><th colspan="2" rowspan="3">구 분</th><th colspan="4">1인당 공제액(단위: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th><th rowspan="2">중견(3년)</th><th rowspan="2">대(2년)</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 rowspan="3">우대</td><td>1년차</td><td>700</td><td>1,000</td><td>500</td><td>300</td></tr><tr><td>2년차</td><td>1,600</td><td>1,900</td><td>900</td><td>500</td></tr><tr><td>3년차</td><td>1,700</td><td>2,000</td><td>900</td><td>-</td></tr><tr><td rowspan="3">기본</td><td>1년차</td><td>400</td><td>700</td><td>300</td><td rowspan="3">-</td></tr><tr><td>2년차</td><td>900</td><td>1,200</td><td>500</td></tr><tr><td>3년차</td><td>1,000</td><td>1,300</td><td>500</td></tr></table>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구 분		1인당 공제액(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3년)	대(2년)	수도권	지방	우대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기본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구 분				1인당 공제액(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3년)	대(2년)																																				
		수도권	지방																																								
우대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기본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⑫ 전자신고세액공제 (법 §104의8)	- 직전 신고 : 2만원(납부할 세액 한도) - 세무대리인 대행 : 세무대리인 본인의 소득법인세 신고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 법인세를 신고 대행한 경우 납세자 1인당 2만원(부가가치세 신고대리에 따른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300만원 한도, 세무회계법인은 750만원 한도)
⑬ 기업의 운영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22)	취약종목의 운영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창단후 3년간 10% 세액공제
⑭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2의4)	-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 있는 경우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 * 전년 초과금액의 50% 또는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3.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구 분	적 용 요 건	감면방법 및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법 §6)	- 과밀억제권역의 지역의 창업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법인 - 창업후 3년 이내 2027. 12. 31까지 벤처기업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창업일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후 5년동안 소득없는 경우 5년)와 그 후 4년간 50%(청년 등 100%) 감면 -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100% 추가감면 - 신성장서비스업종은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②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법 §7)	제조업·건설업·축산업·선박관리업·광고업·무역전시업·기술계학원·지식재산서비스업·연구개발지원업·임업 등 영위하는 중소기업 과세	- 소기업이 도매업 등 : 10% - 수도권 소기업 : 20%, 수도권외 소기업 30% - 수도권외 중기업 : 15%(도매업 등 : 5%) - 수도권 중기업 : 10% 지식기반사업 2028. 12. 31까지
③ 기술취득금액 과세 혜택 (법 §12)	- 특허권 등 기술이전에 따른 소득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술 등을 내국인에게 취득시 -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소득	-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 취득금액의 10% 감면(중견·대기업은 5%) * 소득세·법인세의 10%를 한도로 함. - 소득세 또는 법인세 25% 감면
④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 §12의2)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수×천만원과 투자누계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 소득발생후 3년간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2028. 12. 31까지 승인 및 지정받은 기업
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법 §16의3)	- 벤처기업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과세이연 후 취득주식 양도시 과세 - 취득주식 증여 및 1년내 처분시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과세	- 과세이연 -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⑥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법 §18)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등에 의하여 외국인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	최초 근로 제공일(2028. 12. 31 이전분까지)부터 10년간 50% 세액감면
⑦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8의2)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	- 근로소득의 19% 단일세율과세(비과세·공제·감면 규정 적용 안됨) 2028. 12. 31까지
⑧ 우수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법 §18의3)	연구기술개발 관련 우수인력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 감면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⑨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 §20)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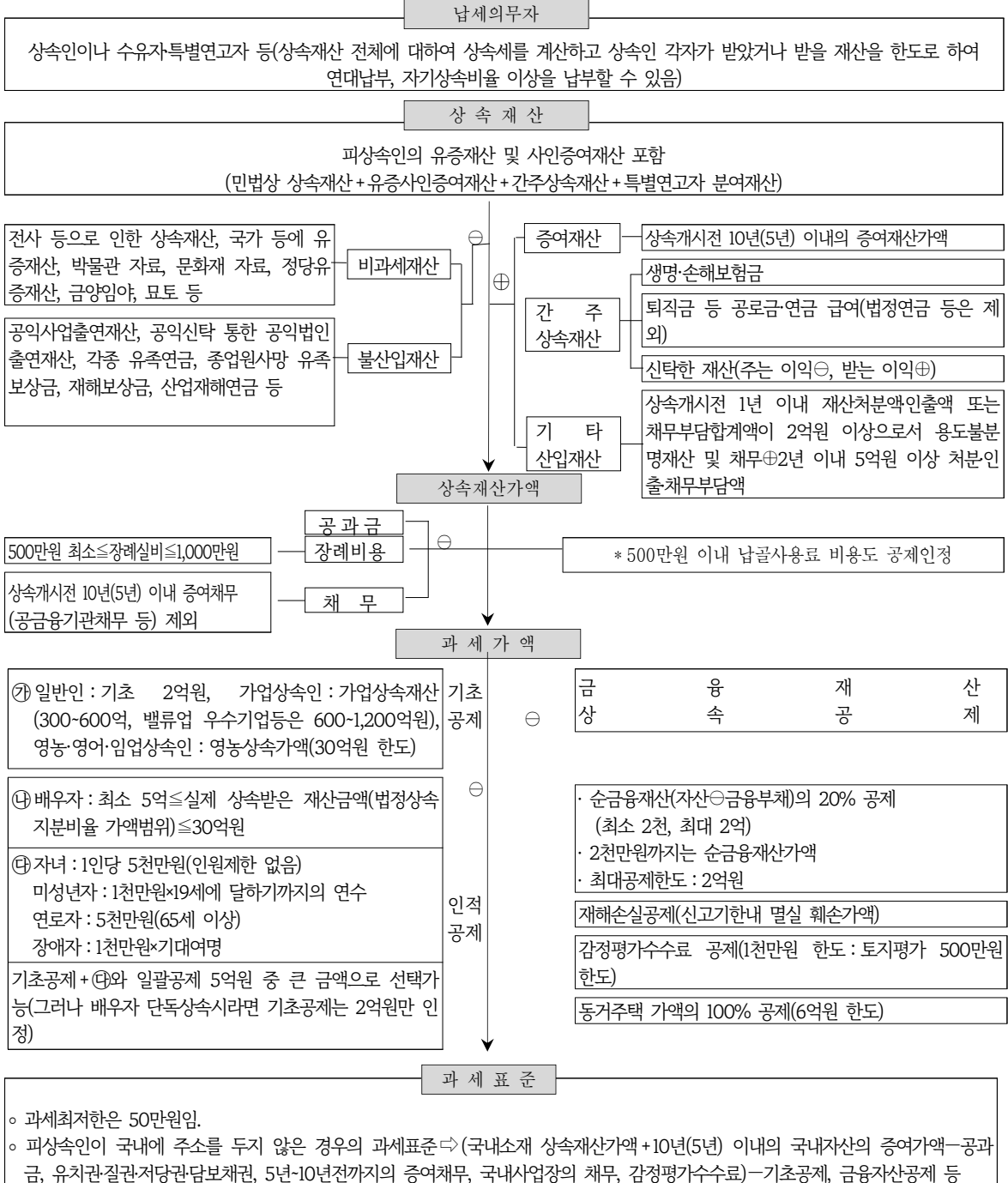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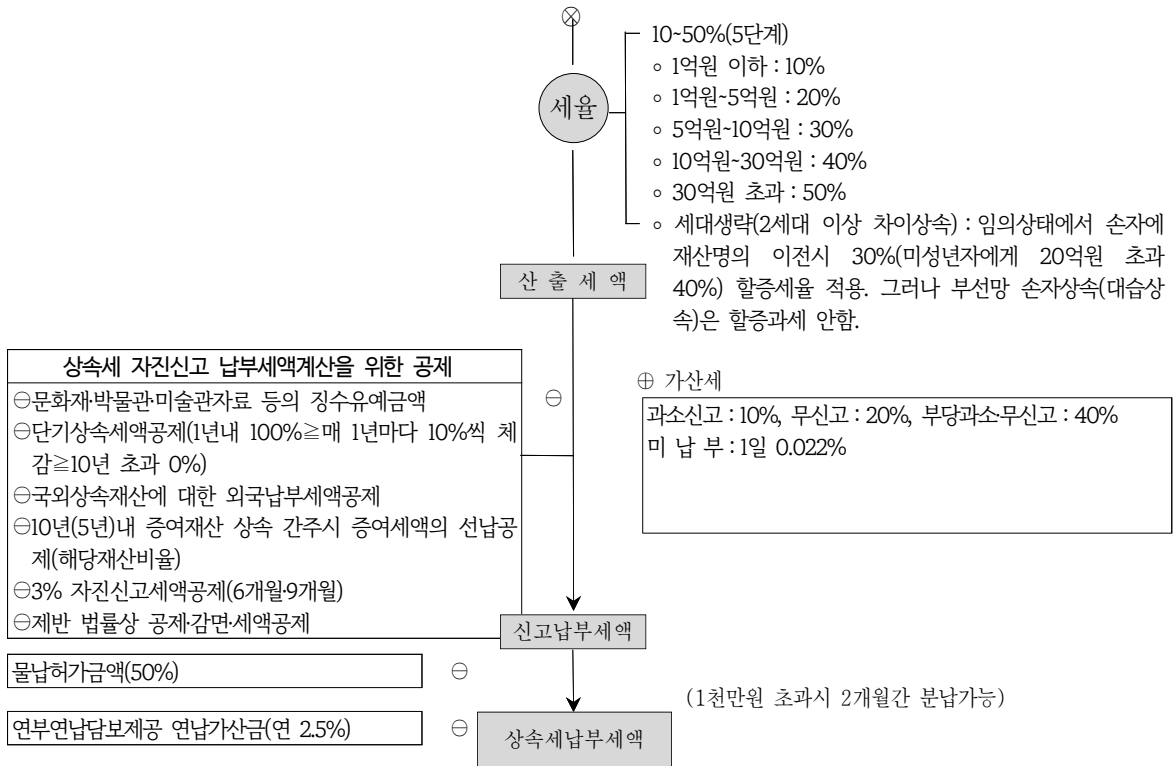
⑩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면제(법 §21)	◦국가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등 ◦국가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을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0% 면제
⑪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법 §30)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 15-29세, 군복무시 최고 35세까지), 60세 이상 및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포함	◦취업후 근로소득세 3년간 70%(90%) 감면 ◦2012. 1. 1~2026. 12. 31까지 취업시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014. 1. 1~2026. 12. 31까지 취업시
⑫ 중소기업간의 통합(법 §31④)	법 §6, §64 규정의 중소기업이 감면기간내 통합시 감면 승계	◦잔존감면 기간내에 100%(50%) 감면적용
⑬ 법인전환 (법 §32④)	제조업, 광업, 건설업, 기타사업(영 §29①) 영위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잔존감면 기간내에 100%(50%) 적용
⑭ 사업전환 (법 §33)	무역조정지원기업 영위 사업을 전환사업으로 전환위해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1년내 대체 취득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개인이 기계장치 취득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토지는 차후 양도시점까지 과세이연함)
⑮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법 §38)	내국법인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주식처분시가지 과세이연함.
⑯ 법인본사공장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법 §63의2)	수도권(4등급 지역)에 3년 이상 계속사업영위 또는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2028. 12. 31까지 이전 및 2031. 12. 31까지 신축개업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6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수도권의 광역시 등 이전시 4년), 그 다음 3년은 50% 감면(수도권의 광역시 등 이전시 2년)
⑰ 농공단지 입주기업(법 §64)	2028. 12. 31까지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또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서 사업영위하는 내국인 등	입주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⑱ 영농조합법인 (법 §6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의 영농조합법인 (2026. 12. 31 이전 종료과세연도까지 적용)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감면 ◦식량작물재배업소득외의 「1,200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 월수/12」 범위내 법인세 면제 ◦농작물 생산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시 이월과세적용
⑲ 영어조합법인 (법 §67)	수산업법상의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연도소득(2026. 12. 31 이전 종료과세연도까지 적용)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2026. 12. 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1,200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 월수/12) 범위내 법인세 100% 감면 과세기간별로 1,200만원 이하
⑳ 농업회사법인 (법 §68)	농업·농촌기본법상의 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 또는 작물재배업소득(2026. 12. 31 이전 종료과세연도까지 적용)	◦전액 감면 ◦식량작물재배업소득외는 설립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50% 감면 ◦농작물 생산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시 이월과세적용 ◦감면신청요
㉑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법 §72)	조합법인 등의 2028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	◦[당기순이익-(기부금+접대비+순금불산입액)]×9%(과세표준 20억원 초과시 12%)
㉒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법 §85의6)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하는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발생소득 2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1억원+취약계층 상시근로자수×2000만원 한도)

㉓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법 §85의8)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지방이전 위해 2028. 12. 31까지 토지 및 건물 양도	◦법인 :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거주자 :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간 분할납부
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법 §85의9)	5년 이상 사용한 물류시설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어 사업시행자에게 2026. 12. 31까지 양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함.
㉕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법 §96)	내국인이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법인세 : 20%-30% 감면(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0%-75%)
㉖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 §99의9)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하는 기업으로 지정기간 내 창업기업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중견·대기업은 다음 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 근로자 수×1,500만원(청년 등 2,000만원)
㉗ 산림개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 §102)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당해 법인이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 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법인세 : 50% 감면
㉘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대손충당금환입액 익금불산입 (법 §104의23)	2014.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K-IFRS 도입으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로 일시 환입분	◦변경 첫째 유예대상 환입액 익금불산입 ◦201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신청서 제출요
㉙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법 §104의24)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창업·신설하고 동일업종 영위	이전일 이후 소득발생연도와 그 후 6년간 100% 감면
㉚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 §104의27)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중간·분기·결산배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제외 ◦14%(2천 이하), 20%(3억 이하), 35%(3억 초과) 분리과세 적용
㉛ 제주첨단과학기술 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㉜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 §121의9)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의 해당 구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해당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감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에 대한 감면 ◦㉠의 1/2를 각각 감면
㉝ 기업도시개발 구역 등의 창업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 §121의17)	㉠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 특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업도시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 특구)시행자의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감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에 대한 감면 ◦㉠의 1/2를 각각 감면
㉞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투자진흥 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 §121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㉟ 비거주자 등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의 과세특례 (법 §141의2)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재고자산을 보세구역 및 물류시설에 보관후 양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 면제 ◦면제신청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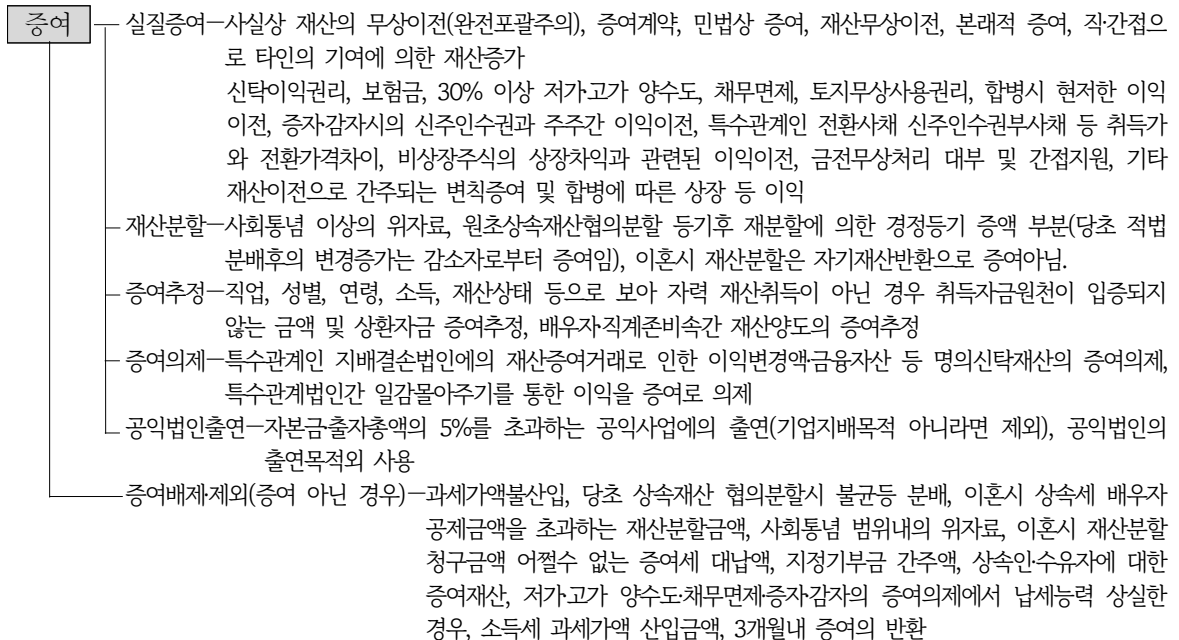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요 ·

1. 상속세 과세방법과 신고납부절차 개요





2. 증여의 유형·종류, 증여배제 및 증여시기 판단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신고납부하는데, 따라서 기한내 적법한 신고납부(10% 세액공제) 및 기한후 가산세(10%~40%)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구 분	재 산	증여시기·증여실행일
일 반	모든 재산	증여수증재산의 현실적 취득일
재 산	토·건물·부동산	등기일·등록일·소유권변경일·명의개서일(명의변경전의 증여아님)
종류별	신축건물 등	준공검사서의 준공일·가옥대장 등재일
	등록동산(항공기·중가자동차)	공부상 등기·등록일
	일반동산(물건·비품 등)	인도일·인도받은 날·점유일·지배일
	주식·유가증권	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배서일·교부일
	정기금·보험금	각 취득일·보험사고발생일
증 여	신탁계약	신탁이익원본·수익수취일
형태별	친인척양도·저가·고가양수도	양도시기·양수시기
	채무면제·채무인수	면제이익수취의사표시일·채무의 실제인수일·승낙일·실제변제일
	합병·증자·감자 등	합병일·주식배정일·소각일

3.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과 증여공제 및 채무공제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합계액(=민법상 증여(실질증여)+증여의제+증여추정)
과세	⊕채차증여의 합계액(=동일인(부부는 하나로 봄)의 10년 이내 증여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합산)
표준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증여재산가액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 3천만원 공제한 금액) ⊖비과세면제자산(국가 등의 증여, 자경농민·자영어민·영농 1자녀 증여면제, 장애인이 보험금수취인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차익 등의 제외) ⊖과세제외자산(공익사업출연재산, 사회공공부조, 국가기부재산, 기타 사회공익·공중목적출연, 정당증여재산) ⊖채무·부담액(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부담채무는 공제안함. 객관적 채무, 제3자의 부담채무 등은 인수증여재산에 포함된 경우 공제함) ⊖증여인적공제(친족공제)한도 : 10년간 합산분 •배우자⇒6억원(10년 단위) •직계존비속(계부·계모도 포함)⇒5천만원 정액(부모합산) •직계비속(미성년자)⇒2천만원 정액(부모합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기타 친족⇒1천만원 정액 •아무관계없는 자인 경우⇒공제액 없음(사회통념상 50만원). •혼인에 따른 증여⇒1억원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4.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이의 환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소유권 환원 이유	구체적인 경우와 사례	당초 증여의 과세여부	환원증여·채증여의 과세여부
적법증여계약후 소유권이전 미실행	준다고 했다가 취소, 행위전 변심	증여세 배제	증여세 배제
적법증여계약,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등 실행후 환원	초단기(3개월내) 반환 단기(6개월내) 반환 범죄, 부양의무 불이행, 배신 파산 및 재정곤란 환원 거액이혼위자료 후 재결합 공제금액한도 이혼위자료 후 재결합 원인무효 재판결과(조세포탈목적) 적법 상속 불균등협의 분할후 변경조정 등기	" 증여세 과세 " " " 증여세 배제 증여세 과세 증여세 배제	" " 증여세 과세 " 증여세 배제 증여세 과세 "
부적법증여계약, 소유권이전 실행후 환원	원인무효 재판결과 환원(진실) 사기, 강박, 불법행위, 착오, 오류, 위조 등 상속시 무효의 협의분할반환	" "	증여세 배제 "

·지방세법 개요·

세 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 율	가 산 세	신고 및 납부
취 득 세	- 부동산 등의 취득자 - 사실상 토지변경자 또는 차량 등 종류 변경자 - 주식 또는 지분 취득하여 과점 주주된 자(지분 50% 초과) - 외국인소유 시설대여물건 국내수입자 - 상속에 의한 취득자 - 조합주택용 부동산 등 취득한 조합원	- 취득 당시 취득자 신고 가액 - 연부취득 시 실제 연부금액 - 법인은 장부상 실제 취득가액	<부동산 취득> - 상속취득 : 농지 2.3%, 농지외 2.8% - 증여·유증(무상취득) : 3.5%, 비영리사업자 2.8% - 원시취득 : 2.8% - 공유물·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취득 : 2.3% - 기타 취득 : 농지 3%, 농지외 4% - 유상취득(주택) : 6억원 이하 1%, 9억원 이하 1.01%~3%, 9억원 초과 3% - 유상취득(2주택) : 8%(비조정지역 1~3%) - 유상취득(3주택) : 12%(비조정지역 8%) - 유상취득(4주택·법인) : 12%(비조정지역 12%) - 주택무상취득 : 3억원 이상 12%, 3억원 미만 3.5% <부동산외 취득> - 선박 -상속취득 2.5% -증여 등 무상취득 3% -원시취득 2.02% -수입 및 건조취득 2.02% -기타 3%(20톤 미만 기선·범선 2.02%, 100톤 미만 부선 2.02%, 20톤 미만 부선 2%) -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경차 4%)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5%(경차 4%) -영업용 4% -이륜자동차 및 건설용 2% -기계장비 3%(건설기계 외 2%) - 항공기-2.02%(5,700kg 이상 2.01%) - 입목-2% - 광업권 또는 어업권-2% - 골프회원권 등-2% - 과밀억제권역안 본점·증축 및 공장의 신·증설(가) ⇨ 표준세율+(증과세율(2%)×2) - 대도시내 법인설립 및 공장 신·증설(나) ⇨ (표준세율×300%) - {증과세율(2%)×2} (가)와 (나)가 중복적용되는 경우는 표준세율×3배 -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등 ⇨ 세율 + {증과세율(2%)×400%} - 조례에 의해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 취득가액 50만원 미만은 면세	- 신고불성실 ⇨ 20%(기한후 신고시 50% 경감) - 납부불성실 ⇨ 낮은 일자수 × 0.03% 2년내 신고납부없이 매각 ⇨ 80%	- 취득후 60일내 신고납부 - 상속취득 ⇨ 6월 이내 (외국 주소 경우 9월 이내)



세 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 율	가 산 세	신고 및 납부
등 록 면 허 세	재산권 기타 권 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 한 사항을 공부 세 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 * 택시 등록세 일몰없이 면 제(조특법)	◦상기와 같음. ◦ 등기·등록당 시 가격 ◦ 등기·등록당 시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시 시가 표준액을 최 하한으로 함.	부 동 산 등 기 ◦소유권 보존 : 0.8%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등 : 0.2%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 0.2%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 6천원 미만시 6천원으로 함. ◦선박등기 : 0.02%, 기타 : 건당 15,000원 ◦자동차등록 : 소유권등록 5%, 저당권설정등록 0.2%, 그 밖의 등록 건당 15,000원 ◦건설기계등록 : 소유권등록 1%, 저당권설정등록 0.2%, 그 밖의 등록 건당 10,000원 ◦항공기등록 : 소유권등록 0.01%, 기타등록 0.02%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 저당권설정등록 0.1%, 그 밖의 등록 건당 9,000원 ◦법인등기 -상사회사·영리법인·합병존속법인 : 0.4% -비영리법인 등 : 0.2%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등 증가 : 증가액의 0.1% -본점·주사무소 이전 : 건당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기타 : 40,200원 ◦상호등기·상호의 설정 및 취득 : 건당 78,700원, 그 외 12,000원 ◦광업권 등록 -광업권 설정 : 135,000원 -광업권 변경 : 증구·증감구 66,500원, 감구 15,000원 -광업권 이전 : 상속이전 26,200원, 기타이전 90,000원 -기타 등록 : 12,000원 ◦어업권 등록 -이전등록 : 상속이전 6,000원, 기타이전 40,200원 -지분이전 : 상속이전 3,000원, 기타이전 21,000원 -기타등록 : 9,000원 ◦저작권·출판권 등 등록 -저작권 등의 상속 : 건당 6,000원 -저작권 등의 상속의 등록 : 건당 40,200원(프로그램 등 20,000원) -그 밖의 등록 : 건당 3,000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록 -상속에 의한 특허권 등 이전 : 건당 12,000원 -그 밖의 원인으로 특허권 등 이전 : 건당 18,000원 ◦상표·서비스표 등록 -상표·서비스표 설정 및 기간 갱신 : 건당 7,600원 -상표·서비스표 이전 : 상속 건당(12,000원), 그 외(건당 18,000원)	◦ 신 고 불 성 실 ⇨ 20% ◦납부불성실⇨늦은 일자수×0.03% ◦부동산등기법상 60일내 미등기 면 과태료 납부 (세액의 5배까지 가능)	등기·등록 하기 전까 지 신고납 부

세 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 율				가 산 세	신고 및 납부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자	면허의 종류별로 과세 (면허내용의 면적·인원·수량 등에 의해 구분)	구분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미납부시 면허취소 요구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레저세	경륜장 등과 장외발매소 사업자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10% [※] 투표권(표) 액면금액				◦신고불성실 $\Rightarrow$ 10% ◦납부불성실 $\Rightarrow$ 1일 0.03%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담배세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자 등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	◦흡연용 제조담배 -제1종 궤련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제3종 엽궤련 1그램당 103원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g당 1.256원 궤련형 20개비당 897원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씹는 제조담배 1그램당 364원 ◦냄새맡는 제조담배 1그램당 26원 *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신고불성실 $\Rightarrow$ 10% ◦납부불성실 $\Rightarrow$ 지연일자 $\times$ 0.03%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
지방소비세	재화 및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등 관할 도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에게 부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감면·공제세액)+가산세]	과세표준 $\times$ 21%				부가가치세법 준용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함(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
주민세	개인 사·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	이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지자체 자율적 제한세율					◦과세기준일 $\Rightarrow$ 매년 8월 1일 ◦납기 $\Rightarrow$ 8. 16-8. 31
사업소분	◦사·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매년 7. 1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법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장 단위로 과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 소연면적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20만원 * 조례 의해 50% 범위내 가감조정 가능 ◦사업소 연면적 1m ² 당 $\leq$ 250원(조례로 정함) ※ 330m ² 이하 면세				◦신고불성실 $\Rightarrow$ 20% ◦납부불성실 $\Rightarrow$ 1일 0.03%	◦과세기준일 $\Rightarrow$ 매년 7월 1일 ◦납기 $\Rightarrow$ 8. 1-8. 31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종업원 지급한 월급여 총액	종업원 급여총액 $\times$ 0.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종업원 50명 이하인 경우 면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0.03%	신고납부 $\Rightarrow$ 익월 10일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신고 및 납부
지방소득세	소사·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소득세액, 법인세액	1.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0.6%~4.5% 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0.6%~4.5%, 4%, 7%, 3%, 1% 등 3.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4.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 소득세액의 10% 5.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2.2%	- 법인세분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소득세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 주민세 신고납부⇒ 익월 10일(분기별 원천징수시 분기 다음달 10일 납입가)
재산세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건물 및 구축물임)	재산의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토지 및 건축물 : 70%, 주택 : 60%)	1. 토지(법 §111①1)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 5,000만원 이하 0.2%에서 1억원 초과 0.5% 적용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 2억원 이하 0.2%에서 10억원 초과 0.4% 적용 ③ 분리과세대상 : 전·답 및 임야⇒0.7% 골프장 등⇒4%, 기타⇒0.2% 2. 건축물(법 §111①2) ① 골프장·고급오락장⇒4% ② 시지역의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0.5% ③ 기타⇒0.25% 3. 주택(법 §111①3) ① 별장 등⇒4% ② 기타⇒6,000만원 이하 0.1%에서 3억원 초과 0.4% 적용 4. 선박(법 §111①4) - 고급선박⇒5% 기타⇒0.3% 5. 항공기(법 §111①5)⇒0.3% 6.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1.25%(최초 5년간) 7. 도시개발구역의 토지⇒0.15% (0.23% 한도) * 조례에 의해 50% 범위내 가감조정 가능 * 세액 2,000원 미만은 부정수	- 무신고시 직권등재 -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징수방법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납기 토지⇒매년 9. 16~9. 30 건축물·선박·항공기⇒매년 7. 16~7. 31 주택⇒세액의 1/2은 7. 16~7. 31 나머지 1/2은 9. 16~9. 30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한 자	차종별 연세액(배기량×요율)	- 승용자동차 : 영업용(1cc당 18~24원), 비영업용(1cc당 80~200원) - 승합자동차 : 영업용(2만5천원~10만원), 비영업용(6만5천원~11만5천원) - 화물자동차 : 영업용(6천6백원~4만5천원), 비영업용(2만8,500원~15만7500원)	납세의무불이행시 등록증·회수, 등록번호표 영치	납기 1기분⇒6. 16~6. 30 2기분⇒12. 16~12. 30
주행분	비영업용승용차의 휘발유·경유 및 유사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있는 자	교통세액×세율(국세인 교통세에 추가되는 지방세임)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 * 대통령령으로 3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가능	- 신고불성실⇒10% - 납부불성실⇒지연일자×0.03%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신고 및 납부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 : 유수이용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하는 자 ◦지하수 : 지하수이용 위해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 :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원자력발전 : 원자력 이용 발전하는 자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m³당 2원 ◦지하수 —음용수 판매위해 채수된 물 ⇨ 1m³당 200원 —목욕용수 이용위해 채수된 물 ⇨ 1m³당 100원 —기타 용수 ⇨ 1m³당 20원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컨테이너 : 컨테이너 1타이유(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1원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3원 *특정부동산 *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은 부정수			◦신고불성실⇨20% ◦납부불성실⇨지연일자*0.03%	조례에 의함.
	◦특정부동산 소유자	① 소방시설 요하는 건축물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채차 적용한 합계액)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② 화재위험건축물의 가액	위 소방시설 세율의 100분의 200			
		③ 대형화재위험건축물 가액 (마트, 백화점, 복합상영관 등)	위 소방시설 세율의 100분의 300			
		④ 오물처리시설·수리 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토지·건축물의 가액	표준세율 ⇨ 0.023%×토지·건물가액			
		* 조례 의해 50% 가감조정 가능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동차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취득물건 과세표준×(취득세율-2%)×20% ◦등록면허세액의 20% ◦재산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주민세균등분의 10%(인구 50만 이상시는 25%) ◦담배소비세액의 50%(2015. 12. 31까지 연장) ◦자동차세액의 30% ◦담배소비세액의 43.99% * 조례 의해 50% 가감조정 가능			◦신고불성실⇨10% ◦납부불성실⇨지연일자*0.03%	각 지방세 납부 시 함께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율

구분	주택		토지	
세율 (농특세 20% 부담)	과세표준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15억원 이하	1,000분의 1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000분의 20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45억원 초과	1,000분의 3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별도합산과세대상》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200억원 이하	1,000분의 5
	94억원 초과	2.7%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000분의 6
	법인	2.7%	400억원 초과	1,000분의 7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 공제>				
보유기간		영세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세액 공제>				
연령		공제율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30		
70세 이상		100분의 40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19일 (금)	12월 22일 (월)	12월 23일 (화)	12월 24일 (수)
미 달 러 (USD)	1477.20	1477.80	1478.90	1483.40
일 본 엔 (JPY)	949.63	937.78	942.15	950.01
영 국 파 운 드 (GBP)	1976.86	1977.44	1991.71	2004.59
캐 나 다 달 러 (CAD)	1072.49	1071.22	1075.80	1083.60
홍 콩 달 러 (HKD)	189.84	189.91	190.08	190.73
위 안 화 (CNH)	210.03	210.11	210.33	211.10
유 로 화 (EUR)	1732.16	1731.02	1739.78	1749.74
호 주 달 러 (AUD)	976.95	977.05	985.10	994.03
싱 가 폴 달 러 (SGD)	1145.25	1143.28	1147.81	1154.35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61.70	362.47	362.65	365.01